#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연구

(최종결과보고서)

2008. 12. 29

문화체육관광부

# 제 출 문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에 관한연구**"의 최종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연구책임자: 김 병 일

제1장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주요국의 복사ㆍ전송권 관리 실태	3
제1절 개관	3
제2절 미국 : 저작권처리센터	5
1. 집중관리의 현황	5
2. 법제도	5
3. Copyright Clearamnce Center(CCC) ·····	8
제3절 유럽	18
1. 영국 : CLA ······	18
2. 독일 : 비지 보르트(WG WORT) ······	21
제4절 일본	
1. 개요	36
2. 집중관리현황	
3. 법제도	39
4. 일본복사권센터	42
5. 일본저작권출판관리시스템	
6. 유한책임중간법인학술저작권협회	48
제5절 우리나라	
1. 개요 ····	50
2. 어문저작문별 집중관리단체	51
3. 집중관리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52
제3장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54
제1절 서언	
제2절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제도의 개선방안	55
1.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방법	55
2. 전송사용료 설정방안	57
3. 전자책(e-book)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60
4. 학술문헌정보(도서 및 논문)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5. 시, 산문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제3절 어문저작물 전송서비스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	67
1.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저작권 권리처리의 문제점	67
2.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리처리 방안	68

3.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활성화 방안 …	······································
[참고문헌] ······ [부록]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복사 기술의 발전과 복사기, 팩시밀리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저작권 보호 체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국마다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결실을 본 것이 복제권 집중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인 'RRO'(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의 등장이다. 즉, 저작자의 복제권(reproduction rights)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저작자의 제한적 권리를 집중관리함으로써 불법 복사복제(unauthorized reprographic reproduction)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복제에 대해서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저작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작·출판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가운데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는 현행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제적 협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Brussels에 본부를 두고 있는 IFRRO(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가 탄생하였지만 전산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기관 내부 전산망(Intranet) 및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유통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화가 진전되어지면서 복사기 또한 단순한 복사는 물론 팩스, 프린터 등의다기능을 수행하고 점점 네트워크에까지 직접 연결되어짐에 따라 복사기가 사라질 것이라던 예측은 맞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작물의 이차적 이용이 널리 확산되면서 아날로그 복제물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포괄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체결하는 관행이나 집중관리제도가 정착되어지는 추세는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엿볼수 있게끔 한다.

수년 전 음반업계를 달궜던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와의 음악 저작권 분쟁이 최근에는 방송사와 문학예술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이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어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인터넷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시·수필 등 어문저작물의 방송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행한 방송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문헌정보 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하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어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디지털네트워크화 및 관련 기술발달로 인하여 전송방법에 의한 어문저작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이용방식과 관련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기준이 없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관련 사

용료 징수규정 개정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구체적 금액과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자간에 현격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문저작물의 전송사용료 징수, 배분 체제의 문제점, 관련 해외 사례와 국내의 유사사례 조사 연구 등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전송이용 수급관련 장래전망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어문저작물의 전송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 합리적 설정 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 사이의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10호는 전송을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어문저작물의 전송이란 디지털화한 어문저작물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웹서버에 올리는 행위 (uploading)과 디지털화한 어문저작물을 이메일이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전송된 자료는 그 이용방법에 따라 저작권자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따라서 디지털형태의 파일 자체를 웹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딩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westlaw나 lexis의 문헌정보제공서비스),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지만 pdf파일을 통한 인쇄출력의 방법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는 후자에 비하여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입장에서 도서 등의 판매기회를 전부 또는 상당부분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송사용료는 어문저작물의 특성과 이러한 이용방법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선례 및 우리나라의 선례를 활용하여 어문저작물의 전송사용료를 검 토하기로 한다. 복사 및 전송권에 대한 집중관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및 일본 등으로 한정하여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는 전송사용료 징수를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하여 이미 전송사용료를 징수·배분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전송사용료 징수 체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전송사용료의 합리적 설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제2장 주요국의 복사·전송권 관리 실태

제1절 개관

저작권의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통합관리할 부처를 신설하기보다는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저작물을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허락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도 그러한 개별적인 저작물 이용을 일일이 감독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자가 개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일괄하여 허락을 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구를 저작권관리단체라고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책과 논문을 복제할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저작권관리단체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복제권관리단체(RRO)<sup>1</sup>)는 선진국에서 기업, 대학, 복사 전문점, 개인에게 복제권을 허락한다. 전세계적으로 스물여섯 RRO들은<sup>2</sup>) 국제복제권관리단체연합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이하에서는 IFRRO로 약칭함)의 회원으로 되어있다. 각국의 RRO는 상호간의 협력에 의하여 타국의 유사단체의 회원을 대행하여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한다.

복사기기의 발달과 보급에 따른 복사문제가 우선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에서의 관심은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전송권을 복사권과 함께 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운영방식 등은 대체로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필 수 있다.3) 첫째, 당사자간의 계약을 통해서 권리처리를 하는 미국이나 영국식 모델, 둘째 법률을 통하여 권리처리를 하는 독일식 모델, 셋째 특정 부류의 권리자 대부분을 포섭하는 단체가 당해 부류 권리자 모두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위탁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을 허락하고 보상금을 징수하는 북유럽국가 모델(덴마크·핀란드·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웨덴), 넷째 교육부문에 대하여 정부와 복사권을 법정허락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네덜란드 모델4이 그것이다.5)

<sup>1)</sup> RRO는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s의 약칭이다. 이하에서는 RRO로 약칭함.

<sup>2)</sup> 예컨대, 미국의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 캐나다의 Canadian Copyright Licensing Agency(CANCOPY), 이탈리아의 Associazione Italiana per i Diritti di Riproduzione delle Opere a Stampa(AIDROS), 영국의 The Copyright Licensing Agency Ltd.(CLA), 일본의 Japan Reprographic Rights Center(JRRC), 독일의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VG WORT)등이 이에 해당한다(http://www.copyright.com/ifrro/drm.html을 참조).

<sup>3)</sup> 허희성 외, 외국의 복사·전송권 관리실태 조사 연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1, 5-6면.

<sup>4)</sup>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나 학교에서는 복사가 자유롭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복제권기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 IFRRO)은 직접적인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국제기구이다. IFRRO는 1980년에 STM(the Copyright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and the International Group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 ; 국제출판자협회와 국제과학기술의학 지출판자그룹의 저작권위원회)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1984년 5월 총회에서 그 실무그룹은 복제권단체의 국제포럼(the International Forum for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이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컨소시엄으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실무그룹내 저작자와 기타 저작권자의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1988년 4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IFRRO는 WIPO, UNESCO, 또는 European Community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 앞에서 IFRRO는 WIPO, UNESCO, 또는 European Community 등과 같은 여러 국제기구 앞에서 IFRRO의 회원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 공식적인 연합 (federation)이 되었다. IFRRO는 베른협약과 국제저작권협약에서 구체화된 기본적인 국제저작권 원칙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기구임을 밝히면서, 대중 및 단체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증대시키고,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 간의 권리 · 저작물 사용료를 양도함에 있어 RRO들의 역할을 증대시키며, 복제권과 관련된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장과 후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p>5)</sup> 이상정,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계간저작권」, 제50호 (2000 여름), 24-25면.

<sup>6)</sup> http://www.ifrro.org. 참조

제2절 미국: 저작권처리센터

#### 1. 집중관리 현황

미국의 저작권관리는 시장경제체제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자유업으로 하고 있고 관리단체의 업무실시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도 없고 다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독점규제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에 대하여 저작권관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와 계약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복수의 저작권의 수탁 또는 대리권의 수권을 받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임의적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7)

미국에서는 복사권에 대해서는 인쇄 및 디지털콘텐츠 형태의 저작물을 관리하는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Inc)가 대표적이며 기업 등의 내부복사를 대상으로 독점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CCC는 미국의 복사권 이용허락기관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인쇄 및 전자적 형태로 된 저작물의 복사 및 배포를 위한 다양한 이용허락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 2. 법제도

미국은 저작권집중관리에 대하여 저작권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집 중관리에 대해서도 따로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위탁하고 저작권관리단체들은 저작권의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집중관리제도를 취하고 있다. 8) 그리고 복수의 저작권의 수탁 또는 대리인의 수권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9) 따라서 미국의 집중관리단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되며 단체간에는 원칙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단지 반트러스트법(The Sherman Antitrust Act)에 기한 판례에 의해 단체의 행위는 대폭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ASCAP 사건10)에서 ASCAP에 대해서 1934년 미국법무부가 반트

<sup>7)</sup> 지적재산권법학회, 「저작권 대리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문화관광부, 2008.5, 23면.

<sup>8)</sup> 相澤英孝, "著作權・著作隣接權といわゆる集中管理",「知的財産權の潮流」,信山社, 1995, 3면; Willmore L, Government Policies Towar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Historical Perpectiv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28, 2002, pp. 89-96.

<sup>9)</sup> Barron. A, Introduction: Harmony or Dissonance? Copyright Conceps and Musical Practice, Social & Legal Studies, 15, 2006, pp. 25-51.

<sup>10)</sup> United States v. ASCAP, CCH 1940-43 tTrad Cases 56 104(S.D.N.Y. 1941)

러스트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이 사건에서 1941년 동의판결(Consent Decree)에 의해 배타적 권리의 취득금지, 이용신청에 대한 응낙의무, 사용료협의가 불성립한 경우 법원에 의한 결정, 법무부의 감독권한 등을 정하여 저작권사업자의 행위를 제한하였다. 1941년 판결은 1950년 수정되었다.

1950년의 동의판결은, 구성회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화, 수입배분을 위한 구성회원의 class를 나누는 방식에 관하여 구성회원에게 개시하는 것, ASCAP 소속의 레퍼토리를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당해 래퍼토리에 속하지 않은 작곡에 관하여 저작권침해 소송의 위험을 회피하게 하는 것, ASCAP 내의 다른 집단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투표 절차를 확보하는 것, ASCAP의 수입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수입분배의 근거에 관하여 구성회원에 대한 완전한 개시, 객관적 기준을 주된 기초로 한 수입배분를 하는 것 및 수입분배를 위하여 구성회원의 class를 나누는 결정에 대하여 외부의 중립적인 자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정하는 등, ASCAP의 내부관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11)

또한, BMI사건에서<sup>12</sup>) 미국의 3대 네트워크의 하나인 CBS가 미국에서 저작권료징수단체인 BMI 및 ASCAP의 저작권규정은 음악저작권자들이 그 이용허락료를 협정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협정(price fixing)에 해당하며, 당연위법이라고 하면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을 구했다. BMI나 ASCAP은 회원으로부터 음악저작권의 신탁을 받아 음악저작권을 집중관리하면서 이용자에게 포괄허락(blanket license)을 하고, 그 로열티 징수업무를 일괄해서 대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지적한 후 포괄허락은 합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첫째, 본건에서는 가격결정권이 저작권자로부터 BMI나 ASCAP으로 이전된 점, 즉 저작권자 등과 BMI 사이에 공동판매계약(또는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에서 Appalachian Coals 사건과 비슷한 판매 조인트 벤처이다.

둘째, 이 조인트 벤처에 의한 포괄허락계약에 의해 음악저작권의 이용자는 일일이 저작권자에게 번거롭게 문의하여 저작권 사용허락교섭을 행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거래비용을 대폭절약하는 것으로 된다. 즉 포괄허락계약은 저작권의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Buffalo Broadcasting Co. v. ASCAP, BMI사건에서는13)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었다. 사안

<sup>11)</sup> 박영길,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 「지적소유권법연구」(제4집), 지적소유권법학회, 2000, 322면.

<sup>12)</sup> Broadcast Music Inc. v. Columbia Broadcasting System, Inc., 441 U.S. 1(1979)

<sup>13)</sup> Buffalo Broadcasting Co. v. ASCAP, BMI 546 F. Supp. 274, 286(S.D.N.Y 1982). 이호홍, "저 작권행사와 독점금지법", 「계간저작권」(제63호), 68면에서 재인용. 항소법원(223 U.S.P.Q. 478(2d Cir. 1984)도 지역텔레비전 방송사로 하여금 음악저작물의 방송에 대해 포괄허락 (blanket license)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제한으로 셔먼법(Sherman Act)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은 약 700개의 지방방송국중의 하나인 Buffalo가 음악저작권의 집중관리단체인 ASCAP과 BMI에 대하여, 음악저작권 사용료의 포괄허락(Blanket Licensing)<sup>14)</sup>은 가격이 고정적이고 경쟁을 저해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함으로써 발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ASCAP과 BMI의 Buffalo에 대한 연주권 허락방식은 불합리한 거래제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포괄허락에 따른 일률적인 음악저작물 사용대가를 일 방적으로 책정한 것이 공정한 경쟁에 저해된다고 본 사안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사이의 관계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몇 가지 분야의 저작물에 한하여 저작물 사용료의 공동징수와 공동분배를 하고15) 저작권법에서는 음반의 제작배포(제115조), 쥬크박스에 의한 연주(제116조), 유선방송에 의한 2차 송신(제111조) 등의 강제허락제도16)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작권사용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1기의 저작권사용료판사(Copyright Royalty Judges)가사용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디지털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용허락 받기는 어렵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약화시킬수 없다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장이며 강제허락제도는 저작물 유통시장의 성장가능성 및 시장교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18) 이러한 이유에서 등장한 것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재정보 및 이용허락 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급하게 하는 저작권 집중관리시스템이다. 미국은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저작권 관리정보를 허가없이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잘못된 저작권 관리정보의 제공이나 배포, 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입법화 할 것을 권유하였고19) 기존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의 소재, 이용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sup>14)</sup> 이는 주로 방송부문에서 방송사가 음악을 일괄하여 이용하고 방송사의 수익 일정비율을 저작권 사용료로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서 일괄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sup>15)</sup> 이진우, "멀티미디어시대의 집중관리제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계간저작권」, 1996 겨울호, 38면.

<sup>16)</sup> 강제허락제도란 저작권자나 관련단체가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사용러가를 거절하는 경우 국가의 심의를 통해 강제적으로 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sup>17)</sup> 저작권사용료중재위원회(CARP: 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s:)는 2004년의 저작권사용료 및 분배 개혁법(the Copyright Royalty and Distribution Reform Act of 2004 (P.L. 108-419) on Nov. 30, 2004)에 의해 저작권사용료위원회(Copyright Royalty Board: CRB)로 대체되었다. CRB는 임기 6년의 3인의 판사로 구성되나 처음에는 각각 임기 2년, 4년, 6년의임기를 가짐으로써 3인의 판사가 한꺼번에 교체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재임(再任)이 가능하다. 2년 임기였던 Dr. James H. Billington이 최근 6년 임기의 판사로 재선임 되었다.

<sup>18)</sup> Roos, J. W, Copyright Protection as Access Barrier for People who Read Differently: the case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I.F.L.A Journal, 31, 2005, pp. 52-67.

<sup>19)</sup> Ronald H. Brow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U.S.A), September, 1995, pp. 235-236.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3.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 가. 개요

미국에는 복사 및 전송권의 처리기구로서 "저작권처리센터(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가 있다. 이는 1975년 당시 미국저작권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원의 사법위원회가 그 심의과정에서 "권리 및 사용료 교환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개정 저작권법 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개정저작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도서관 등에서 복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 처리를 적정하게 행할 수 있는 집중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요망된다"는 뜻의 권고를 행한 것이 미국에서의 복사권집중관리기구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이 권고를 받은 저작자 및 출판자 단체는 저작물 이용자인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와 협의하여 1977년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비영리법인인 저작권처리센터를 설립하였다.20) 이 센터는 개정저작권법 시행일인 1978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 1979년 최초 분배를 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21)

CCC는 초기에 저자나 출판자가 이용요금을 직접 결정하고, 이용자는 스스로 이용현황을 신고함으로써 CCC가 해당되는 요금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 정수하는 체제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향후 CCC의 대표적인 이용허락 시스템인 TRS시스템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이용허락은 행정적인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정수 요금이 높아 실질적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CCC는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도입, 발전시켰는데(이는 현행 AAS시스템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의 채택이 저작물 이용의 편이성을 제공하고 CCC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었으나 이 역시 저작권 집중관리를 저작권자 및 이용자들에게 널리 확대 보급하기에는 미약하였다. CCC가 업무 수행에 활력을 얻게 된 것은 1991년 Kinko's 판결이 선고된 후이다. Kinko's 사건은 CCC에 가입한 출판업자들이 대학 근처 Texaco 복사점의 과학학술잡지 무단복제행위에 대하여 제소함으로써 시작하였다. Texaco 측은 연구목적의 복제이므로 공정이용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공정이용의 4가지 전제를 검토한 후 CCC를 통해서 손쉽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었음을 이유로 Texaco의 무단복제는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Kinko's 판결은 CCC를 노골적으로 승인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 판결이 선고된 후 하루 2000건 이상의 이용허락 요청이 쇄도하는 등 CCC의 업무 추진에 일대 전환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sup>20)</sup> http://www.ifrro.org/show.aspx?pageid=members/rrodetails&memberid=8(2008.12.1 방문)

<sup>21)</sup>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 802 F. Supp. 1. 7- 8 (S.D.N.Y. 1992).

CCC는 i) 저작물의 복사 및 전자적인 이용에 대한 로얄티의 적정한 징수 및 분배를 통한 집중관리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저작자 및 출판자들의 에이전시로서 활동하고 ii)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축적된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단일 창구를 제공하며 iii) 부상하는 정보기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집중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C는 현재 175만건 이상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9600여개의 출판사 및 수십만명의 저작자를 직접 또는 그들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표하고 있다. CCC가 라이선스하고 있는 미국 내 이용자는 수천 개의 정부기관, 법률회사, 자료제공업자, 도서관, 연구소, 복사점 및 서점, 그리고 9000개 이상(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중 90개를 포함)의 법인 및 자회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처리센터가 다른 국가의 복사권관리기구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복사료를 상호 주고받는 곳은 25개국 25개 단체이다.22)

저작권처리센터가 2007년 모든 라이선싱을 통해 징수한 금액은 193,300,000.00 달러(이중 국내 복제라이선싱 징수료는 USD 153,900,000.00)이고, 분배액은 USD 134,100,000.00이다.

# 나. 주요기능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copyrighted materials)에 대하여 계약상 허락된 복제를 쉽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그 복제에 대한 저작권자의 보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에 그 기능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저작권처리센터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간편한 허락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용자들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출판자(저작권자)에게 분배하여 이용자가 직접 출판자를 접촉하는 불편을 제거하는 것이 동 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것이다.

CCC의 대표적인 이용허락시스템은 AAS(Annual Authorization Service)와 TRS(Transactional Reporting Service)이다. AAS는 법률회사나 직원이 750명 이상인 미국내 기관/협회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기관은 CCC가 관리하는 175만건 이상의 저작물을 내부 사용을 위하여 복사하는 것에 대한 일괄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개별적인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부담을 덜기 위해 CCC가 1983년에 채택한 것으로서, 오늘날 6000여개를 초과하는 기업

<sup>22)</sup> Access Copyright (Canada), AIDRO (Italy), Bonus Presskopia (Sweden), CAL (Australia), CFC (France), CEDRO (Spain), CLA (UK), CLASS (Singapore) CLL (New Zealand), COPIBEC (Canada/Quebec), COPY-DAN (Denmark), DALRO (South Africa), HKRRLS (Hong Kong), ICLA (Ireland), JAACC (Japan), JAMCOPY (Jamaica), JCLS (Japan), KOPINOR (Norway-unilateral), KOPIOSTO (Finland), NLA (UK), Pro Litteris (Switzerland), Reprobel (Belgium) SR (Netherlands), STM-RRO (Netherlands), VG WORT (Germany).

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CCC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다.

TRS는 저작물을 대량 복사/배포하는 도서관 또는 저작물 복사/배포를 업으로 하는 복사점, 자료 제공업자들에 대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CCC에 등록되어 있는 175만 저작물에 대해 24시간 이내의 즉각적인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CCC가 제공한 가장 오래된 이용허락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이용자는 CCC에 등록된 출판물을 복제한 경우에 그 복제물의 목록을 정리하여 CCC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CC는 이 보고를 기초로 하여 각 저작권자 및 출판자가 받을 금액과 가입자가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다.

이 외에도 Academic Permissions Service(APS),23) Author Services(AS),24) Electronic Course Content Service(ECCS),25) Federal Government Photocopy Licensing Service(FGPLS),26) Foreign Authorizations Service(FAS),27) Extension of Foreign Authorizations Service(EFAS), Media Image Resource Alliance (Mira),28) Photocopy Authorizations License(PAL),29) Republication Licensing Service(RLS)30)와 같은 업무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표 1: CCC에서의 이용허락>

<sup>23)</sup> APS는 강의교재나 강의자료를 제작, 복사할 경우를 위한 저작물 이용허락 시스템이다. 'CCC online'을 활용하여 CCC에 등록되어 있는 수천개의 저작물로부터 복사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을 얻을 수 있다.

<sup>24)</sup> 저작자서비스(AS)로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을 확대시켜 더 많은 대가가 저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sup>25)</sup> ECCS는 전자적 강의교재, 전자적 저장 및 원격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학생 및 교수는 대학강의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sup>26)</sup> FGPLS는 정부기관의 직원들이 CCC에 등록된 175만 이상의 저작물을 내부용으로 복사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이용허락하는 시스템이다.

<sup>27)</sup> FAS는 외국 복사권 단체에게 미국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EFAS는 외국 자회사를 보유한 미국 법인이나 자국에 복사권 단체가 없는 국가를 위해서 FAS를 확대 적용한 시스템이다.

<sup>28)</sup> Mira는 출판사, 광고회사 및 기타 기관이 사진 저작물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및 복사이용허락을 얻기 위한 디지털 수단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sup>29)</sup> PAL은 직원이 750명 이하인 협회나 기관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일 이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당 기관은 CCC에 등록된 175만 이상의 저작물을 내부용으로 복사하는 것에 대한 일괄이용허락을 얻을 수 있다.

<sup>30)</sup> RLS는 저작물의 재출판, 재생산, 재배포에 대한 이용허락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책·CD-ROM은 물론 연속간행물·전자우편이나 웹을 통한 전자적 전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작물을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한다(CCC 1999).

거래이용허락	포괄이용허락(Blanket License)		
	유형복제물 배포	전자배포	
① Academic Permissions	(Photocopy Distribution)	(Electronic Distribution)	
Service(APS)	① 연 간 권 한 부 여 서 비 스	① 디지털관리수정서비스(Digital	
② 전자교재콘텐츠서비스	AAS(Annual Authorization	, ,	
(Electronic Course Content	Service)와 복사권한계약(PAL)	Repertory Amendment to	
Service(ECCS))	② 다국적 관리저작물 이용허락	Annual Photocopy Licensing	
` ''	서비스(Multinational Repertory	Service)	
		② CCC의 전자수정서비스(CCC'	
	Licensing Service)	Electronic Amendment to PAL)	
Service(RLS))	③ 연방정부 복사이용 허락 서비	③ 다국적 디지털관리 수정서비	
④디지털허락서비스(Digital	스(Federal Government		
Permission Service)	Photocopy Licensing	스(Multinational Digital	
	Service(FGPLS)	Repertory Amendment)	

# 다. 권리위탁방법

저작권처리센터는 단순히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창구에 지나지 않으나, 저작권자는 통상 저작자로부터 권리양도를 받은 출판자이다. 저작권처리센터의 권리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교과서, 영상 및 비디오를 포함하는 각종 형태의 미디어에서 다양한 저작권을 가진 자이다. 현재 권리자의 대략적인 수는 저작자가 수십만이며, 출판사가 9.600사로 집계된다. 저작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그들의 출판사나 기타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하고 있다.31) 저작자 및 출판자와 저작권처리센터의 권리관계 등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자는 출판사에게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을 양도한다. 이 경우 저작자가 사용료를 분배받는가 여부는 계약상의 문제이다. 둘째, 출판사가 저작권처리센터에 출판사명, 출판물명, 저작물의 사용료 등을 등록함으로써 저작권처리센터가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 라 계약유형·내용과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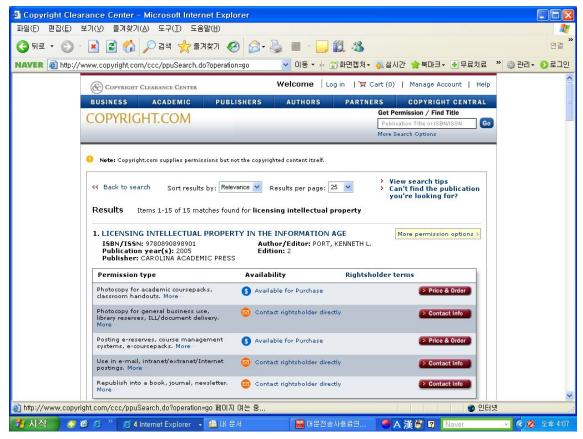
# (1) 기본체계

저작권처리센터는 이용허락 대가를 받고 저작물의 복사 등을 제공한다. 이의 구체적 구현형 태는 음악분야의 ASCAP과 BMI에서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저작권처리센터는 출판사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면서 지정한 복사에 대한 고정대가로써 이용자들에게 허락하고, 동 센터가 징수한 이용대가를 복사에 대한 보상으로서 출판사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sup>31)</sup> http://www.ifrro.org/members/ccc.html

저작권처리센터는,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상업적, 산업적 및 기타의 사업자, 전문기관, 정부기관, 학술적 도서관, 연구기관, 복사업체, 자료제공서비스(document delivery service), 대학과 개인들에게도 사진적 복사허락을 한다. 또한,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고 회사와 대학들에 대하여 전송허락(digital network license)도 한다.

허락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저작권처리센터에 의하여 대표되는 모든 저작물들을 포함하는 포괄 허락(blanket basis)으로, 이는 사업자, 상업자 및 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형적인 허락이다. 다른 하나는 복사할 때마다 지급하는 잠정적인 허락(pay-per-transaction basis)으로, 이는 학술적, 공공적 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전형적인 허락이다.



<그림: pay-per-transaction의 사례>

저작권처리센터는 새로운 기술분야에도 허락을 실시하고 있다. 단체 내부의 통신망(corporate intranets)으로 스캔하고, 저장하고, 프린트하고 다운로드 하는(scan-store-print-download) 행위를 포함하는 전자적 권리(electronic rights)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제한적이다. 디지털 사용과 사진술 분야에서 허락은 오직 잠정허락에만 가능하고 포괄허락에는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32).

잠정허락(potential license)에서 개별계약은 저작권처리센터의 웹사이트

<sup>32)</sup> Meville Nimmer & David Nimmer, *NIMMER ON COPYRIGHT*, vol. 5(Matthew Bender, 2001), pp. 26- 160.

"www.copyright.com"으로 저작권처리센터와 직접적인 계약에 의하여 관리저작물의허락과 가격의 점검이 가능하다.

# (2) 대상저작물

저작권처리센터가 취급하는 저작물의 종류는 전문잡지, 논문집 및 기타 축차간행물에 게재된 개개의 기사 및 논문이다. 단행본에 대하여는 현재 취급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으며 장래의 과제로 되어 있다. 취급하는 축차간행물의 범위에 한정은 없으나 실제상, 물리, 화학 등의 자연과학계의 학술관계의 것이 많다. 또한 저작권처리센터가 취급하는 축차간행물은 국내의 것에 한하지 않는다. 외국 출판자에 대하여도 이 저작권 처리 시스템에 대한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처리센터가 복사허락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수령하는 저작물의 형태는 복사는 모든 범주의 인쇄된 저작물 및 사진 등으로서 현재 대략 2.000만 종이다.

#### (3) 이용자

저작권처리센터의 이용자로는, i) 복사허락 대상처가 상업적 및 공업적 회사, 전문기관, 정부기관, 도서관, 연구기관, 복사업자, 자료제공서비스, 대학, 일반학교(school) 및 개인이며, 디지털 네트워크 대상처가 영리나 비영리 회사, 대학 및 일반학교이고, ii) 허락을 하지 않는 대상처의 경우에는 모든 범주의 권리관리기구(right management service)이다.

# 마. 복사와 전송사용료의 결정방법

권리자가 복사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도서, 정기간행물 등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고, 저작물이용자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 출판사는 그 회사명, 출판물명, 저작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사용요금(복사료)를 등록하여야 하고, 저작물이용자는 그 기관명칭, 담당자명 등을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다. 복사의 이용대가도 등록시 출판사가 지정하고, 저작물이용자는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된 복사료를 미리 알고 저작물을 이용(복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사용료나 고정사용료 없이 천차만별이다. 인심 좋은 출판사의 대중적인 도서 등에 대하여는 무료가 있는 반면에 희귀한 의학, 자연과학분야 등의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연구 논문 등에 대하여는 최고 1면당 15달러나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평균 복사료는 1면당 2달러 정도로 추산된다.33)한편, 1983년부터는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한 출판사는 출판물의 권두란 또는 발행인란 근

<sup>33)</sup> 이호흥,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저작권연구자료 30(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22면.

처에 "사용료를 지급하면 복사를 허락한다"는 요지의 문언과 함께 소정의 사용료 코드(ISSN, 국제표준 축차간행물번호로 이 번호에는 발행년도, 저작물별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를 함께 인쇄하여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코드만 해독하면 사용료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바. 사용료 징수, 분배방법 및 액수

# (1) 사용료 징수방법

저작권처리센터는 동 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자인 출판사와 저작물 이용자인 기업 등이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출판사는 그 회사명, 출판물명, 그 출판물에 게재된 저작물의 사용요금 등을 등록하고, 저작물 이용자는 그 기관명, 담당자명 등을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한다. 이 경우 사용료 결정은 저작권처리센터가 관여하지 않고, 권리자 자신이 결정한다.34)

저작권처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출판물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 등을 복사한 자는 통상 각월마다 복사실적 보고를 행한다. 저작권처리센터는 저작물 이용자로부터의 보고에 기하여 복사실적의 확인을 행한 후, 사용료의 청구를 행한다.

#### 2) 사용료 분배방법

저작권처리센터가 징수한 사용료는 분기마다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보고된 복사실적에 기하여 각 기사의 1부당 통상 25센트의 관리수수료를 차감한 후, 복사빈도에 응하여 출판자에게 분배된다(출판자로부터 저작자에게 사용료가 분배되는가 아닌가는 양자의 계약상 문제이고 저작권처리센터는 관여하지 않는다).

또 관리수수료 등의 공제에 관하여는 징수액의 20-30%정도가 관리수수료로 공제되고 있다.

#### 사. 소결

현행 미국 저작권법상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ing)제도<sup>35)</sup>에 대한 이용료 책정과 배분은 의회와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s(CARPs)가 담당하고 있다. 강제허락제도는 시장 원리에 따른 저작물 이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 등을 배경으로 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sup>34)</sup> 현실에서는 면당 무료에서부터 15달러까지 폭이 있으나, 표준은 2달러 전후이다.

<sup>35)</sup> 구체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허락은 5가지로서 ① 111조: 케이블 텔레비전의 2차적 재전송(secondary retransmission), ② 114조: 가입자를 상대로 하거나 기존 위성을 이용한 쌍방향 서비스가 아닌 디지털 오디오 전송 서비스, ③ 115조: 非드라마용 음악저작물의 음반 제작과 배포, ④ 118조: 非상업용 교육방송에서의 저작물 사용, ⑤ 119조: 위성방송을 私的 용도로 시청할 경우의 2차적 재전송(한시적 규정임)이다.

일찍이 강제허락에서 필요한 적절한 보상금을 정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1976년의 저작권법은 Copyright Royalty Tribunal(CRT)로 하여금 담당토록 하였다. 그러나 조직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의 결과 1993년의 'Copyright Royalty Tribunal Reform Act of 1993'을 통하여 폐지하고, 대신 'Copyright Arbitration Royalty Panels'(CARPs)이 탄생되었지만 강제허락제도의효율적 운영은 다시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36)

이러한 강제허락제도의 테두리 밖에는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거, 저작물이 활용되는 1차적 시장이 있고, 이보다 훨씬 규모는 작지만 집중관리단체의 매개를 통해 저작물의 2차적 활용을 도와주는 또 다른 시장이 자리 잡게 된다.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 Inc.)는 이러한 2차적 활용을 도와주는 집중관리단체로서 순전히 시장 원리에 따라 이용자와의 자발적 계약에 의해 인쇄되었거나 전자 파일의 형태로 된 저작물³ワ)) 에 대한 복사, 전송권에 대한 집중관리와 권리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저작권법에는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CCC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수는 없으며, 비영리기업으로서 설립지법인 뉴욕州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뿐이고, 기타 모든 것은 계약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즉, 구체적으로 권리자가 복사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CCC에 등록하여야 하고(출판사의 경우에는 회사명, 출판물명, 복사료 등을 등록함), 이용자 역시 CCC에 등록을 하고 이용시 미리 권리자에 의해 정해진 대가를 알고 클릭함으로써(click-wrap contract)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매개하는 CCC의 임무는 먼저, 국내외 저작자와 출판사들에게 복사기 복제 (photocopying)와 저작물의 전자이용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와 배분을 통해 효율적 집중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CCC는 IFRRO의 멤버로서 세계 25개국 집중관리단체 (RRO)와의 쌍무협정을 통해 미국 저작물의 해외 사용에 대해서도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지출의 약 3/4은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로 배분하며, 영업과 시장조사 등에 약 10% 정도의 지출함으로써 사용료를 둘러싸고 저작권자에게 보다 유리한 사전조사를 매년 여러 번 하고 있는 등 궁극적 혜택을 저작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둘째는 가능한 한 많은 문서저작물을 담당하는 집중관리기관으로서 모든 종류의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단일한 이용허락계약을 제공토록 하는 것, 셋째로는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추어 집중관리제도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 등으로 CCC의 임무를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 CCC는 단순히 이용허락계약과 이용료의 분배 업무뿐만 아니라 디지털 저작

<sup>36)</sup> Craig Joyce, William Patry, Marshall Leaffer, Peter Jaszi, Copyright Law pp.438-440 (4th edition), 1998.

<sup>37)</sup> 사진저작물의 경우 ASMP(American Society of Media Photographers)라는 별도의 집중관리 단체가 기능하고 있다.

권 관련 정보의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services)까지도 수행함으로써 수동적인 집중 관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저작권 권리관계의 처리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2001년 기준으로 1년 동안의 총 수입이 약 9300만 달러 정도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를 넘는 부분이 'Rightslink'라고 불리우는 온라인상의 디지털 권리관리 서비스를 통해 연간 권한부여 서비스(Annual Authorization Service)와 복사권한허락(Photocopy Authorization License) 등 관리저작물 이용허락 서비스(Repertory Licensing Service)에서 나오고 있음을 보아도38)잘 알 수 있다.

한편, CCC의 이용허락계약서비스는 이용료의 지불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즉 거래이용 허락과 포괄이용허락으로 구분되어진다.

먼저 포괄이용허락계약(blanket licensing)은 일정 연회비를 내면 CCC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한 무제한의 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연회비는 CCC가 매년 이용자들의 실제 복사량, 해당 분야별 복사에 관한 데이터, 그리고 권리자들이 정하는 이용료 등에 기초한 통계 수치로 결정하며, 복사물의 조직 내 분배 방식 차이에 따라 유형복제물(Photocopy) 분배 방식과 전자배분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 다른 계약 유형인 거래에 따른 이용허락계약(transactional licensing)은 각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과 사용용도별로 복제에 대한 이용료를 개별 결정하고 구체적 복제물에 대해 집중관리단체가 각각의 비용을 징수(copy-by-copy tracking)하는 구조이며, 대체적으로 포괄이용허락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제공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이처럼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다양한 개별 계약을 통하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배분하는 미국의 이용허락계약 방식은 궁극적으로 개별 권리자에게 선택권을 충분히 줌으로써 지적 창작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히 집중관리단체에게 과도한 전산화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Rightslink'로 표현되는 CCC의 이용허락, 저작물 再이용 프로그램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와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는 저작자와 출판사에게 상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 을 극복하고 있다. CCC 전체 수입원의 비중으로 본다면 포괄이용허락계약 對 거래이용허락 對 국제업무가 대략 4:2:1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이 된다.

또한, 이용허락계약을 기초로 운영하되 구체적 이용량에 따른 요금 청구와 징수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CCC의 엄청난 비용 부담을 오히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요금을 스스로 정하고 이를 이용자들이 사전에 알고 선택적으로 이용토록 함으로써 없애는 대신, CCC는 시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권리

<sup>38)</sup>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콘텐츠 표준사용료 1차 보고서』, 2002년 12월, 28-31면 참조.

자는 정확한 가격 책정을, 이용자는 지출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있다는 점 도 주목해야 한다.

<표 2: 주요 라이선싱 서비스 요약>

Courigo Namo	Format(s)	Internal or	Trung of Hag	Market	True of Customore
Service Name	covered	Extermal Use	Type of Use	Reached	Type of Customers
			Annual Licenses		
A n n u a l Authorizations Service (AAS)	Print	Inside an organization	organization Photocopies	Business, Government	Scientists, engineers, trainers, attorneys, sales and marketing, human resources, information professionals, finance
Digital Repertory Amendment (DRA)	Digital	Inside an organization	E-mail, intranet postings and other digital formats	Business.	Scientists, engineers, trainers, attorneys, sales and marketing, human resources, information professionals, finance
			Pay-Per-Use Services	3	
A cademic Permissions Service (APS)	Print	Inside an a c a d e m i c institution	Coursepacks and	Academic	Librarians, faculty, staff, students, copy shops, bookstores
Electronic Course Content Service (ECCS)	Digital	a c a d e m i c	Electronic coursepacks, library e-reserves and course management system postings	Academic	Librarians, faculty, staff, students, bookstores, custom publishers
Transactional Reporting Service (TRS)	Print			Business, Government,	Librarians, faculty, staff, students, corporate users, document suppliers, copy shops, bookstores
D : - : - 1		T		Business,	Corporate users,
Digital		Inside and	, , ,	Government.	scientists, marketing
Permissions	Digital		on intranet, extranet	Service	
Service (DPS)		organization	and Internet sites	Providers	suppliers
Republication Licensing Service (RLS)	l Digital	Inside and outside an organization	PowerPoint	Business,	Marketing professionals, book publishers, freelance
Point of Content Licenses					
Rightslink®	Print, Digital	Inside and	Print and digital	Academic Business,	Librarians, faculty, staff, students, corporate users, document suppliers copy shops, bookstores

# 제3절 유럽

1. 영국: CLA

#### 가. 집중관리 현황

영국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업무와 운영에 관해 따로 규제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자유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법상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의한 규제와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한다.39) 영국은 저작권의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집중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최초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Mecolico(Mechanical Copyright Licenses Company Limited)와 PRS(Performong Right Society Limited)이다.40) Mecolico는 1911년 법 당시에 음반제작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PRS는 1914년 당시 주로 인쇄물의 형태로 발행되었던 음악 저작물에 대하여 작곡가 등의 권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영국의 집중관리단체는 복사권에 대해서는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 Ltd)가 있다.41) 현재 영국에서는 각 저작권별로 10여개 이상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권한의 암용 가능성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요과적인 규제수단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42)

#### 나. 법제도

영국은 1956년 법에 의한 실연권심판소(Performing Right Tribunal)로, 상연, 연주, 방송에 관계된 분쟁만을 취급했는데, 1988년 법에 의해 현재의 형태로 개조되어, 복제권, 레코드·영화·컴퓨터·프로그램의 대여권, 실연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취급하게 되었다.43)

본 재판소가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당사자 간에 위 사용허가규정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사용허가규정을 심사하여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sup>39)</sup> 한국저작권법학회, 전게보고서, 문화관광부, 2004.8, 74면;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632면.

<sup>40)</sup> Kevin Garnett, Jonathan Rayner James & Gillian Davies, Copinger and Skone James on Copyright(14th ed), Sweet & Maxwell Ltd, 1999, pp.1496-1497.

<sup>41)</sup> 著作權法令研究會,「逐條解說 著作權等管理事業法」, 有斐閣, 2001, 19-20 巴.

<sup>42)</sup>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법 체계 개선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4, 76면; 박덕영,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 「지식재산연구(제1권 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6, 167면.

<sup>43)</sup> 지적재산권법학회, 「저작권 대리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8.5, 37-38면.

조항을 변경할 권한이 있고, 관리단체가 특정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거절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용요구를 거절할 적정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용허가권 부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용료·사용기간 및 사용조건의 불합리한 것으로 주장되는 경우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용료 또는 사용조건을 결정한다.44)

이 후 영국의 1988년 개정된 저작권법45)은 저작권관리업에 대하여 허락기관이란 저작권자나 장래의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저작권허락을 교섭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그 주요한 목적 또는 그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하는 단체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하며, 다수 저작자의 저 작물에 적용되는 허락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6 조).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허락요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46) 이를 둘러싼 문제 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8장에서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47) 그 주요 내용은 허락요강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종류의 사안에 적용되는 그러한 것인 경 우에 허락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조직체는 허락기관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안된 허락요강의 조건을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저작권심판소는 회부의 접수를 결정하면 회부된 사항을 검토하고, 그 요강안을 일반적으로 또는 요강안이 관계하는 종류의 하도에서,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명령 을 발할 수 있다(제118조, 제119조). 또한, 요강을 심판소에 재회부할 수도 있다(제120조). 그 리고 허락요강이 적용되는 사례나 제외되는 사례에서 요강의 운영자가 그 요강에 따라 허락 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허락 부여의 취득을 거절하거나 청구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저작권심판소에 신청할 수 있다(제121조)고 규정 하고 있다.

허락기관이 어떤 조건에서 허락의 부여를 제안하는 경우, 그 조건은 장래에 허락을 받는 사람에 의해 저작권심판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심판소는 먼저 회부에 대하여 그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회부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그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심판소가 회부

<sup>44)</sup>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633면.

<sup>45)</sup> CDPA 1988: Copyright Designs and Patens Act 1988

<sup>46)</sup> 제116조 (허락요강과 허락기관) (1)이 편에서 "허락요강"이란, (b)요강의 운영자나 그에 의하여 대리되는 자가 부여하고자 하는 事案의 種類 및 기술한 요강을 말하며, 이 목적상 그것이 요 강, 요금표 기타 명칭으로 기술되어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요강의 성질에 속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sup>47)</sup> 제149조 (심판소의 관할권) 저작권심판소는 다음의 조항에 따른 절차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a)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20조 (허락요강의 회부), (b)제121조 또는 제122조 (허락요강에 따라 허락을 받는 자격에 관한 신청), (c)제125조, 제126조 또는 제127조 (허락기관에 의한 허락에 관한 회부 및 신청), (d)제139조 (명령에 대한 항고), (e)제142조 (녹음물, 영화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대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기타의 금액), (f)제144조 제4항 (권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허락의 조건을 결정하는 신청), (g)제190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실연자를 위하여 동의할 수 있는 심판소의 권한), (h)부칙6 제5조 (어린이 환자 병원의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와 기타 보수의 결정)

의 접수를 결정하면, 심판소는 회부된 허락의 조건을 심리하고, 그 조건을 확인 또는 변경하면서 심판소가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명령으로 발하게 된다. 또한 만료된 허락기관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만료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심판소에 회부할수 있으며 이 신청은 허락이 종결되기 전 3개월까지는 행사할 수 없고 심판소는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합리적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는 사람이 계속하여 허락의 이익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명령을 발한다(제125조 내지 제128조).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요강의 이용가능성,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허락의 부여, 그러한 요강 또는 허락의 조건. 또한, 회부나 신청이 관련될요강 혹은 허락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허락을 얻는 사람과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다른 요강 또는 허락에 따라 허락을 얻는 사람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그 권한을 행사한다(제129조). 그러나 저작권심판소가 관련된 모든 고려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35조).

영국에서 저작권심판소의 역할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허락에 있어 허락요강에 대하여 다양하게 검토할 수 없고 회원간의 내부적인 분쟁에 관여할 수 없으며 영국 내 라이선스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sup>48</sup>)

# 다. Copyright Licensing Agency(CLA)

CLA는 영국의 복사권 단체이며 국제복사권단체협회의 회원이다. CLA는 책·저널·간행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하여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ALCS(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ng Society)와 PLS(Publisher Licensing Society)가 영국의 저작자 및 출판자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82년에 설립하였으며, 수수료만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이다.

CLA의 주요 업무는 관리 저작물로부터의 복사에 대해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라이선스 받은 이용자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징수된 복사비를 저자 및 출판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CLA는 위탁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수행한다.. 현재 약 5만명의 저작자 및 1700여개의 출판사를 대리하여 이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저작물은 주로 책, 저널 및 간행물이다. 음악, 지도, 신문, 미술 저작물은 현재의 CLA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CLA의 이용자는 31,000개의 학교, 1,252개의 대학/대학원/계속교육원, 160개의 중앙/지방정부부처, 733개의 기관에 달한다.

CLA의 이용허락 유형은 비즈니스/산업, 중앙/지방정부, 대학교육, 계속교육, 학교, 국제 부

<sup>48)</sup> Emily Lui, The Eurovision Song Contest: a proposal for Reconciling the National Regulation of Music Collecting Societies and the Single European Market, Arts & Entertainment Law review (issue 4), 2003, p. 76.

문으로 나뉜다. 비즈니스/산업 부문에 대한 라이선스는 1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종류에 따 라 1인당 12파운드, 25파운드 또는 37.5파운드씩 부과한다. 중앙/지방정부 부문에 대한 라이 선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으로 구별된다. 중앙정부 부문은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라이선스되고 수수료는 저작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책정된다. 지방정부 부문을 위해서는 1년 마다 갱신되는 잠정적인 라이선스가 제공되고 있다. 공공기관 부분에 대해서는 선임급 또는 그 이상의 직원에 대해 1인당 25파운드의 비용을 부과하는 표준 라이선스가 제공된다. 대학 교육 부문에 대한 라이선스는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이 라이선스를 체결 하면 교수와 학생은 영국 및 CLA가 상호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출판된 책 및 저널을 복사하 는 것이 허용되며, 대학은 수업용으로 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다. 계속교육 부문에 대한 라이 선스는 계속교육, 6년제, 독립대학, 직업훈련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이 라이선스는 수업 중의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다량 복사 및 수업교재의 제작을 허용한다. 라이선스 수수료를 저작권 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몇몇 기관을 선정하여 30일 동안 복사의 종류 및 양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학교 부문에 대한 라이선스는 지방교육당국, 법정(grant maintained)학교, 독립학교, 언어학교 등이 대상이 된다. 학교 종류별로 30일간의 조사를 통하여 수수료를 책정한다.49) 한편 1998년부터 저작권자 대표기관들이 인쇄본의 디지털화를 대상으로 하여 'opt in' 방식 에 의한 이용허락 계획에 동의함으로써 디지털화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까지 업무를 확장시 킬 수 있게 되었다.50)

# 2. 독일: 비지 보르트(WG WORT)

#### 가. 집중관리 현황

멀티미디어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개별저작권자로부터 각각의 특정권리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와 저작권사용자 사이의 중개자로서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Verwertungsgesellschaften)는 20세기초부터 발전되어 왔다.51) 이러한 저작권관리업은 한편으로는 신탁형태로 저작권사용에 대한 경제적인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해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사용하려는 제작자에게 필요한 권리를 주는 것을 용이하

<sup>49)</sup> 이용가능한 라이선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cla.co.uk/licenceinformation\_typesoflicenceavailable.php.

<sup>50)</sup> http://www.cla.co.uk/list\_included\_digital\_works.php(2008.12.10 방문). 단, 디지털 이용허락을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허가한 저작물에 대해 정확하게 저작물을 현시하고, 저작권자가 정한수수료에 의해 개별적으로 디지털화 이용허락을 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였다.

<sup>51)</sup> 독일의 저작권관리업(Verwertungsgesellschaften)의 역사에 대해서는 Juristische Kurz-Rehbinder, Urheberrecht, 14. Auflage, C.H. Beck, 2006, 440 ff.

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대행하여 왔다.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는 모두 12개가 있다고 한다.52) 어문저작물에 관해서는 VG WORT(Verwertungsgesellschaft WORT)가 복사권도 포함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리단체의 연합체로 저작권법상 특정권능과 관련된 징수연합(Inkassozusammen schlüsse)으로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상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ZPÜ(Zentralstelle für Überspielungs rechte), "도서관대여"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ZBT(Zentralstelle für Bibliothekanthieme), ZFS, ZVV, ZWF, ARGE DRAMA 등 7개의 단체들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저작권법상 특정되어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수개의 관련 관리단체들의 임의적인 모임이다. 이들 단체가 징수한 보상액은 그 단체를 구성하는 관리단체들 사이에서 다시 분배되고, 각 관리단체는 다시 소속회원에게 분배하게 된다.53)

이렇듯 각각의 저작권(예를 들어 음악, 사진 또는 텍스트)에 대해 각각의 독자적인 저작권집 중관리단체가 있다.54) 이러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힘을 가진 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GEMA를 들 수 있다.55) 다음에서는 독일의 저작권관리회사의시스템을 GEMA의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GEMA의 권리행사에 대한 계약적 근거는 GEMA의 저작권관리범위는 권리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그 범위내에서 권리자도 GEMA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라 이는 특수한 형태의 저작권법상 사용계약으로 위임의 요소뿐 아니라 신탁관계, 조합관계, 고용계약과 사무처리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한다.56) 이러한 권리계약 (Berechtigungsvertrag)57)을 통해서 각각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

<sup>52)</sup> Daniel Gerva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pp. 199-201; Magaret Möller,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 and Neighboring Rights: Experienc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Copyright, no.11, November 1988, pp. 482-490.

<sup>53)</sup> 한국저작권법학회, 전게서, 문화관광부, 2004.8, 37면 주51.

<sup>54)</sup> 현재 독일에서는 음악에 대해서는 GEMA(Gesellschaft für musikalische- und mechanische Vervielfältigungsrechte, München/Berlin), 뮤직제작자와 음악가와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GVL(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mbH, Hamburg), VG Wort (München), 예술가, 사진 및 영화에 대해서는 VG Bild-Kunst(Bonn/Berlin), 영화 및 텔레비젼 제작자에 대해서는 VFF(Verwertungsgesellschaft der Film- und Fernsehproduzenten mbH, München), 영화제작물에 대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VGF(Verwertungsgesellschaft für Nutzungsrechte an Filmwerken mbH, Wiesbaden/München), GWFF(Gesellschaft zur Wahrnehmung von Film- und Fernsehrechten mbH, München), GÜFA(Gesellschaft zur Übernahme und Wahrnehmung von Filmaufführungsrechten mbH, Düsseldorf), AGICOA GmbH (Urheberrechtsschutz GmbH, München) 등이 저작권관리업을 하고 있다.

<sup>55)</sup> Juristische Kurz-Rehbinder, Urheberrecht, 14. Auflage, C.H. Beck, 2006, 441.

<sup>56)</sup> 정선주, "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EMA'", 「계간저작권(통권 제46권)」, 저작권심의조 정위원회, 1999(여름호), 19-20면.

<sup>57) 1996</sup>년도 권리계약(Berechtigungsvertrag)에 대해서는 Kreile (Hrsg.), GEMA Jahrbuch, 1.

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권을 저작자 (Urheber)가 각각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이전하게 된다 (§ 1 und 3 GEMA-BerV).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제작자들(Produzenten)에게 이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2 Nr. 2, 2. Abs. Satzung der GEMA<sup>58)</sup>). 뿐만 아니라 저작권관리법(UrhWG) 제 11조 제1항에 따라 저작권관리회사의 측면에서 체약강제 (Kontrahierungszwang)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인정한 배타적인 사용권리는 집단적인 권리 (kollektive Rechte)를 표시할 수 있다.59) GEMA는 주로 음악이용에 대한 복제 및 배급권 (Vervielfältigungs- und Verbreitungsrecht) (독일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과 공개재현권 (Recht zur öffentlichen Wiedergabe) (독일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을 보유하고 분배한다.60) 국제적인 관계에서 GEMA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사용, 특히 온라인사용에서도 순수한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국내법상 저작권관리회사는 상호계약 (Gegenseitigkeitsverträge)<sup>61</sup>)을 체결하였다 (§2 Nr. 2 Satzung der GEMA: "bilaterale Verträge"). 따라서 외국의 저작권자의 이익은 독일에서도 보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저작권자도 외국에서 보호받게 된다.

#### 나. 법제도 개요

독일은 사적복제보상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징수금액도 별표로서 법정 되어 있지만, 저작권 처리기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직접적 처리규정이 없다. 그러나 저작권의 관리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저작권법과는 별도로 저작권관리법을 만들어 집중관리단체의설립과 운영·감독 등을 정부의 통제 하에 비교적 엄격하게 행하고 있다.62) 독일은 저작권관리단체를 규율하기 위하여 1965년 전면개정 저작권법과 더불어 특별법인 저작권 및 인접보호권의 관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저작권관리법 (UrhWG))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63)

Auflage, Gruyter Recht,, 1997/98, S. 203 ff.

<sup>58)</sup> 이에 대한 조항은 Kreile (Hrsg.), GEMA Jahrbuch, 1. Auflage, Gruyter Recht, 1997/98, S. 189 ff.

<sup>59)</sup> Juristische Kurz-Rehbinder, Urheberrecht, 14. Auflage, C.H. Beck, 2006. 374.

<sup>60)</sup> 그 밖에도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특히, 권리계약 (Berechtigungsvertrag)을 통해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이전되지는 않는 가공권 (Bearbeitungsrecht) (독일저작권법 제 23조)이 있다.

<sup>61)</sup> 표준계약에 대해서는 Kreile (Hrsg.), GEMA Jahrbuch 1997/98, S. 260 ff.

<sup>62)</sup>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U.S.A),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he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ptember, 1995, pp. 235-236; 독일문헌으로 자세한 것은 Vogel, Wahrnehmungsrecht und Verwertungsgesell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RUR 1993, 513.

이 법에 의하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다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하는 자는 관리에 관하여 자기에게 의뢰된 권리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자에게는 저작권법 제109조에 의한 고소권이 귀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3항).

그리고 관리단체의 정관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일을 행함에 필요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체의 경제적 기반으로는 그 단체에 의뢰된 권리 및 청구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제3조) 허가의 철회사유를 두고 있다 (제4조).

독일 저작권관리법 제2장에서는 관리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저작권관리의무인 관리단체는 자신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를 권리자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조건으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관리강제규정(제6조)이 있다. 이것은 배타적인 이용권을 인정하는 기존제도에 대하여 입법자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이용자와 관련하여 저작권위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하는 것이다.여) 또한, 일정한 분배표에 의한 자의적인 방법을 배제하는 일정한 규칙(분배표)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한다는 수입의 분배규정(제7조), 서면에 의한 요구에 응해, 어떤 저작물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할 의무(제10조), 상당한 조건의이용허락의무인 체약강제(제11조), 상당한 조건으로 포괄계약을 체결할 의무도 있다. 다만,단체의 회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포괄계약의 체결을 관리단체에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제12조). 포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합의된 보수요율 등(제13조)에 관하여 규정하여 저작권등의 관리에 동등하고 상당한 조건을 부여하고 분쟁발생시 중재소를 두어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제14조). 그러나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65)

<sup>63) 1965</sup>년 9월 9일 BGBI. I. S. 1294로 제정되었으며, 2003년 9월 10일 BGBI. I. S. 1774; 정보화 사회의 저작권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저작권법개정법을 통하여 최근에 개정되었다. 물론 1933년에 음악공연권중개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동법에 의하면 음악부분에 관한 한 저작 권관리단체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4.8, 36면 참조.

<sup>64)</sup> 지적재산권법학회, 「대리중개제도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8.5, 35면.

<sup>65)</sup> 제16조 (재판상의 행사) ① 제14조 제1항에 의한 분쟁에 있어서의 청구권은 중재소에서의 절차가 선행된 후에야 소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② 전항은 제14조 제1항 제1호 a에 의한 분쟁으로서의 요율의 적용과 상당성에 대한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율의적용 혹은 상당성에 다툼이 있음이 소송과정에서야 나타난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소송을 중지한다. 중지 후 2개월 내에 요율의 적용 또는 상당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중재소에 신청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이 속행된다. 이 경우에 관리단체가이용관계에 설정한 요율의 적용과 상당성이 승인된 것으로 한다

또한, 준비금 및 공제제도 등 회원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관한 의무(제8조)가 부과되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저작물의 대여보수, 사적녹음녹화보상금, 복사복제보상금 등에 관계된 보수청구권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에 의한 행사가 의무화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7조, 제54조).

독일은 저작권관리법을 통하여 저작권관리단체에 대한 통제 및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저작 권자의 권리보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채권적 형태의 권리인 특색이 있는 독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가 특히 문제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저작권관리법을 통해 관리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실질 적으로 저작자들의 보호에 충실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60

독일의 경우 우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먼저 우리와 같은 허가제를 통해 저작권집중관리업을 규제하고 있지만 공동행사를 관리하는 자는 그 관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타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부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자와 관리단체간의 관리계약의 성질과 관계없이 공동행사와 일시적 또는 단기적 관리에 대해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없이 관리하는 경우 의뢰된 권리 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고소권이 귀속되지 아니한다. 특히, 저작권의 관리를 상당한 조건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우리집중관리업의 문제인 이용허락을 거부하는 것을 제약시키고 있고, 자의적인 방법을 배제하는일정한 분배표에 의한 수입의 분배규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한 행사에서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리스트를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발생한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 다. VG WORT

#### (1) 서설

독일은 2003년 9월 10일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는데,67 이에 의하여 독일은 2001년 5월 22일의 유럽연합의 저작권지침(2001/29/EC)<sup>68)</sup>을 국내입법화하였다. 개정법은 저작권지침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물이용환경의 변화를 독일저작권법에 수용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입법자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이

<sup>66)</sup>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7, 72-73면.

<sup>67) &</sup>quot;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s Urheberrecht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vom 10. September 2003), BGBl. 2003 Teil I, S. 1774.

<sup>68)</sup>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22.6.2001, L 167/10.

용에 대해서까지 저작자의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이용권, 즉 전송권(제19조의a)과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의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조치의 보호(제95조의a)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디지털 사적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개정법은 새로운 저작권제한사유로서 제52조의a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수업과 연구목적을 위하여 전송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제한규정은 교과서출판사, 학술서적출판사 및 영화업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그 적용범위를 좁게 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69)

따라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과 관련하여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 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VG WORT'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사나 전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 (2) VG WORT의 현황

# (가) 설립경위

저작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도 확대되었다. 어문저작물의 저작자 및 그 출판사들의 권리는 1958년 설립된 "VG WORT"(문예학술저작권 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1978년에는 "VG WORT"와 "VG WISSENSCHAFT"가 통합되었다. 후자는 과거 "복제권사용료 징수 유한회사"70)로부터 유래하는 것인데, 이는 "독일서점 협회"71) 가 설립한 단체였다. 양 관리단체의 통합 이후 VG WISSENSCHAFT에서 관리하던 업무는 이제 VG WORT의 "학술부(Abteilung Wissenschaft.)"에서 담당하고 있다.72)

# (나) VG WORT의 주요업무 및 현황

VG WORT의 주요임무는 저작자와 출판사들을 위하여 저작권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이를 가능한 한 최소의 관리비용으로 각 권리자들에게 분배하는 데에 있다. 그 밖에 VG WORT는 사회적 또는 기술적 발전으로 인하여 출현하는 새로운 저작물이용가능성을 파악하여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때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법개정을 제안하는 일도 하고 있다.73)

<sup>69)</sup> 안효질,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제한, " 디지털재산법연구 제3권 제1호 (2004), 150면..

<sup>70)</sup> Inkassostelle für urheberrechtliche Vervielfältigungsgebühren GmbH.

<sup>71)</sup> Börsenvereins des Deutschen Buchhandels.

<sup>72)</sup> http://www.vgwort.de/wiss\_info.php(2008.111.30 방문).

<sup>73)</sup> 이하 "Merkblatt VG WORT" (Fassung Juli 2002) 참조. 〈http://www.vgwort.de〉

VG WORT는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것 이외에, 학술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 내에 그려 놓은 그림 및 사진(예컨대 학술적·기술적 성질의 도표)에 대한 권리도 관리한다(VG WORT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함) 제2조 I). 그 밖의 일반적인 그림에 대한 권리는 VG Bild-Kunst에서 관리한다. 1998년 이후에는 VG WORT는 그 외에도 출판사가 어문저작물이 수록된 음반(예컨대 오디오북 또는 교재)의 제작자로서 활동하는 경우에 그 저작인접권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그러한 권리들을 이미 "저작인접권관리단체"(GVL)74)에 신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VG WORT의 전체 수입은 2007년 현재 89,060,000유로이며, 분배액은 66,666,674유로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Total amount collected	EUR 89,060,000	Total amount distributed	EUR 66,666,674.
for all licensing		from all licensing	
Total amount collected for		Total amount distributed to	
reproduction licensing	EUR 45,193,000	national rightsholders	EUR 62,066,674
Total amount collected		Total Amount distributed to	
nationally for reproduction	EUR 42,640,000	Total Amount distributed to	EUR 2,056,016.
licensing		foreign RROs	, ,
Total amount received for			
licensing from other RROs	EUR 5,306,000		

<표 3: VG WORT의 2007년 징수 및 분배 현황>

VG WORT는 독일저작권관리단체법75) 제18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독일특허상표청의 저작권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독일특허상표청은 독일연방카르텔청과 협의하여 저작권관리단체를 감독한다. VG WORT는 바이에른주의 경제교통부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76) 이다. 또한 외국의 복사권기구와의 상호관리계약은 주요국가의 30단체와 체결 중에 있으며, 그 중 징수한 사용료를 송부하는 기구(A type)가 CCC, CLA 등 12개 단체이고, 사용료를 송부하지 않는 기구(B type)가 CAL(호주), COPIBEC (Canada) 등 18개 단체이다.

#### (다) VG WORT의 신탁관리권리77)

world-wide

74) Gesellschaft zur Verwertung von Leistungsschutzrechten mbH.

<sup>(2008.12.10</sup> 방문).

<sup>75)</sup> 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 1965년 9월 9일 독일저작권법과 동시에 제정.

<sup>76)</sup> 현재 독일에 존재하는 저작권관리단체의 법적 성격은 다양하다. GEMA, VG WORT, VG Bild-Kunst 등은 사단법인(rechtsfähiger Verein)이고, GVL은 유한회사(GmbH), ZPÜ는 민법상의 조합이다.

<sup>77)</sup> 이하의 설명은, 안효질, "독일 VG WORT의 운영실태와 국내 저작권관리제도의 개선방향, 知

# 1) 라디오·텔레비전방송의 공중재현 및 복제기기 및 테이프보상금(독일저작권법 제21조 -22조, 제54조 제1항)78)

이는 원래의 방송이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방송을 공중재현하는 것과 같은 소위 "2차적 재현권"(Zweitwiedergaberecht)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에는 복제기기 및 테이프 보상금(녹음기, 비디오플레이어, 녹음 및 녹화테이프 등의 제조자 및 수입자의 보상금)이 포함된다.

# 2) 小放送權(독일저작권법 제20조)79)

소위 "小放送權"(kleines Senderecht)은 저작권법상의 개념은 아니고 방송사업자와의 방송계약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출판된 어문저작물 중의 일부를 텔레비전에서는 10분, 라디오에서는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이 경우에도 그 방송이 장면 또는 영상에 의한 표현, 연극화 또는 연극저작물의 낭독(Lesung)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VG WORT에서 관리하는 권리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방송권(소위 "大放送權"(großes Senderecht))을 제외한 이유는, 이러한 권리는 보통 출판사들이 출판계약에 포함시켜 직접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80)

# 3) 복제물의 대여 및 공공대출(독일저작권법 제27조)81)

이는 공공도서관에서의 저작권사용료(Bibliothekstantieme)를 의미한다. 현재 독일연방과 각주는 매년 11,640,000유로를 공공대출보상금으로 받고 있으며, 세금을 공제하면 10,880,000유로가 남고, 그 중에서 VG WORT는 약 91.15%에 해당하는 9,920,000유로를 받는다. 다시 그 중에서 10%는 관리비용으로, 22.5%는 VG WORT의 학술부로 귀속되며, 전체 50%는 저작자부양소의 기금으로 조성된다. 또한 전체에서 최고 10%까지 사회기금으로 조성되며, 최종적으로남는 금액이 각 권리자들에게 분배된다.

# 4) 교과용도서 보상금(독일저작권법 제46조, 제62조)82)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나, 저작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제로는 교과용도서출판사가 VG WORT에 통지하며, 후자는 출처표시의 오류와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통지를 저작자에게 전달한다. 저작자

的財産權의 現在와 未來;素潭 金明信先生 華甲記念論文集, 2004 법문사, 128면 이하.

<sup>78)</sup> Wahrnehmungsvertrag der VG WORT(이하 "신탁관리계약"이라 함) 제1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http://www.vgwort.de/files/wahrnehmungsvertrag\_0508.pdf(2008.11.20방문)

<sup>79)</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7항.

<sup>80)</sup> 이에 대해서는 Ulmer, Urheber-und Verlagsrecht, S. 412 (3. Aufl., 1980) 참조.

<sup>81)</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항.

<sup>82)</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6항.

는 법률상 정해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독일저작권법 제46조 참조).

# 5) 신문스크랩보상금(Pressespiegelvergütung)83)

우리 저작권법과는 달리 독일저작권법상으로는 개개의 방송해설과 신문 및 기타 단지 일상의 관심사를 위한 정보지의 개개의 기사를 다른 신문 및 같은 종류의 정보지에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복제되는 해설 및 기사는 정치, 경제 또는 종교에 관한 시사문제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이용자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독일 저작권법 제49조 제1항 참조).

# 6) 사진복사보상금(독일저작권법 제53조, 제54조의a)84)

독일저작권법상 복사기기(사진복사기, 팩스, 스캐너 등)의 제조자와 수입자는 판매되거나] 거래에 제공된 모든 기기에 대하여 일괄적인 보상금(복사기기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학교, 대학교, 교육기관, 연구소, 도서관 또는 복사점과 같은 복사자들도 그들이 복사한 것에 대하여 보상금(복사기운영자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독일저작권법 제54조a 참조). 이 경우 보상금은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복사기기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보상금에 대해서 관련된 모든 사항은 그들과 VG WORT 가 포괄계약(Gesamtvertrag)의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대학 및 도서관에서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VG WORT가 각 주와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해결한다. 또한 교회, 시민대학(Volkshochschule), 교육기관, 연구소, 연방정부 등과도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복사점 및 소매점에서의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VG WORT가 수많은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의 액수 및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보상금의 액수는 독일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공표된다.

# 7) 구술저작물 및 공개강연(독일저작권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85)

이러한 저작물이용의 경우 저작권사용료의 징수액이 적기 때문에 각 이용사실을 항상 조사할 수 없다.

# 8) 신매체(독일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제16조)86)

처음에는 종이신문에 공표된 기사 또는 처음에는 방송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전자적 정보처리장치 또는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복제권 및 공중재현권을 관리한다. 이

<sup>83)</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4항.

<sup>84)</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5항.

<sup>85)</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9항 및 제10항.

<sup>86)</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8항.

경우 각 권리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탁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 9) 공중재현(독일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87

우리 저작권법 제29조와 유사하게 독일저작권법상으로도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 및 무상으로 공중재현하는 것은 허용되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분야의 수입은 많지 않다.

# 10) 영업자의 복제 및 공중재현(독일저작권법 제56조)88)

녹화 또는 녹음매체, 그러한 매체의 제조장치, 방송의 재생 또는 수신용기기를 판매 또는 수리하는 영업에 있어서 이러한 장치 및 기기를 고객에게 전시하기 위하여 또는 기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물을 녹화 또는 녹음매체에 옮기거나, 그 매체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재현하거나 저작물의 방송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작된 녹화 또는 녹음매체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워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VG WOR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GEMA의 대외사업팀 (AuBendienst)이 징수한다.

# 11) 케이블텔레비전(독일저작권법 제20조 제2항)89

# 12) 학교방송(독일저작권법 제47조 제2항)90

학교는 학교방송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녹화물이나 녹음물은 학교방송을 복제한 연도의 다음해의 학년 말에는 말소되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 을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3) 교육목적의 복제 및 배포(독일저작권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91)

14) CD-ROM에 수록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독일저작권법 제16조, 제17조 제1항)92) 점차 많은 출판사들이 과거에 발행된 신문이나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출판사들은 각 저작자들로부터 해당 권리를 부여받지 않았거

<sup>87)</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2항.

<sup>88)</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3항.

<sup>89)</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3항.

<sup>90)</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5항.

<sup>91)</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6항.

<sup>92)</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7항.

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회원총회는 VG WORT에게 기존에 인쇄된 편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공표된 저작물과 출판사가 해당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 CD-ROM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 15) Pay-TV, Pay-Radio, TV-on-demand, Radio-on-demand 등(독일저작권법 제15조 제2 항, 제20조, WCT 제8조)93)

# 16) 저작물의 온라인이용(독일저작권법 제15조 제2항, 제16조)94)

저작물을 CD-ROM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원총회는 VG WORT에게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 17) 공중시설에 의한 복사배달서비스(독일저작권법 제27조, 제49조, 제54조의a)95)

독일연방보통법원의 판결%)주43) 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복사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 서비스제공자는 VG WORT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방법

비지 보르트가 독일 산업연맹과의 포괄계약을 체결하여 복제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나, 산업 연맹은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이며, 실제적인 사용료의 지급은 산업연맹에 가입한 개별기업이며, 각 기업은 포괄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한다. 즉 복사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각 사업체의 연합단체와 협상에 의하여 포괄계약을 체결하고, 실제적인 사용료의 지급은 그 포괄계약에서 명시된 4가지 지급방법 중에서 해당 기업이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기업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주로 연간사용료에 의하는 것이다.

# (가) 독일저작권법상 복제보상금의 액수

#### 1) 법규정

독일 저작권법 제54 d조 제1항은 동법 제54조 제1항 및 동법 제54 a조 제1항과 제2항에 따

<sup>93)</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8항.

<sup>94)</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19항.

<sup>95)</sup> 신탁관리계약 제1조 제20항.

<sup>96)</sup> BGH Urteil vom 25. Februar 1999 (I ZR 118/96) - "Kopienversanddienst" (GRUR 1999, 707).

른 보상금의 액수를 부록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은 영상이나 음반을 녹음하는 기기에 대한 것이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저작물이 방송되는 경우 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녹화기기 또는 녹음기기에 복제하거나 또는 어떤 한 녹화 내지 녹음기기로부터 다른 녹화 내지 녹음 기기로 복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녹화기기 및 녹음기기의 제조자와 그 기기에 사용되는 녹화 및 녹음용 매체(테이프)의 제작자는 저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조자뿐만 아니라 녹화 및 녹음기기 또는 이를 위한 테이프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자들도 연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총복제시간이 6,000시간 미만인 녹화 및 녹음테이프를 구매하거나 100개 미만의 복제기기를 구입하는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독일저작권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은 녹화 및 녹음기기와 그 테이프에 대한 보상금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독일저작권법 제54 a조는 저작물을 사진술을 이용하여 복제하는 경우에 관한 보상금규정이다. 동 규정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그 저작물이 사적인 범위내에서 사진복사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복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복사기기의 제조자는 저작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조자뿐만 아니라 그 복사기기를 영리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거래하는 자들도 연대하여 보상금을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위의 복사기기를 20대 미만 구매하는 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이 규정은 우리가 통상의 어문저작물을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대한 보상금규정이다. 동조 제2항에 따르면, 위의 복사기기가 초·중등·고등학교, 대학교 및기타 직업교육기관,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또는 복사기기를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는 기관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그 복사기기의 운영자에 대해서도 적절한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각종학교, 도서관 또는 복사점에서복사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규정이다. 특히 독일저작권법 제54 a조 제2항에 따라서 복사기기의 운영자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금의 액수는 그 복사기기의 위치 및 통상의 사용실태 등 제반환경을 고려하여 그 복사기기사용의 방법 및 범위에 따라서 결정하여야한다(독일저작권법 제54 d조 제2항).

여기서 독일저작권법 부록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로 하며,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독일저작권법 부록에 규정된 보상금의 액수는 당사자들이 보상금 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독일저작권법 제54 d조 제1항 참조).

부록 I. 독일저작권법 제54조 제1항 (녹화·녹음기기, 녹화·녹음매체)	보상금
1. 녹음기기 1개	1.28 유로
2. 별도의 녹음·녹화매체가 없어도 작동가능한 녹음기기 1 개	2.56유로
3. 녹화기기 1개(음의 수반여부를 불문)	9.21 유로
4. 녹음매체의 경우 1시간의 녹음시간	0.0614 유로
5. 녹화매체의 경우 1시간의 녹화시간	0.0870 유로
6. 별도의 녹음·녹화매체가 없어도 작동가능한 녹화기기	18.42 유로

[표 4] <녹음·녹화기기 및 녹음·녹화용 매체 보상금>

부록 II. 독일저작권법 제54a조 제1항 및 제2항(복사기)	보상금
1. 복사기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한 보상금(제1항)	
1분당 2~12 매 복사기	38.35 유로
1분당 13~35 매 복사기	51.13 유로
1분당 36~70 매 복사기	76.70 유로
1분당 70 매 이상의 복사기	306.78 유로
2. 복사기운영자에 대한 보상금(DIN A4 1매당)(제2항)	
a) 주정부에서 교과서로 허가받은 책으로 오직 학교교-	0.0056 0.3
용으로만 사용되는 책의 복사	0.0256 유로
b) 기타의 복사	0.0103 유로
그 카리보기기이 카리보기된는 거으	각각 제1호 및 제2호의
3. 칼라복사기와 칼라복사하는 경우	보상금의 2배
4. 사진복사와 유사한 기타 다른 방법으로 복제하는 경우	이 보상금액수를 유추 적용

[표 5] <사진복사기 보상금>

#### 2) 포괄계약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독일저작권법 제54 d조 및 그 부록에 의한 보상금의 액수는 당사자의합의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어문저작물에 관하여 본다면, 독일에서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인 보르트 (WORT)는 저명조사기관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복사실태를 조사하게 하였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독일저작권법 제54 a조 제2항의 복사기운영자의 보상금의 결정이었다. 동법 제54조 및 제54 a조 제1항은 각종 복제기기의 제조자 및 판매자에 대한 보상금규정으로 이 경우 보상금의 정도는 객관적인 제조 또는 판매수량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위에 말한 제54 a조 제2항의 복사기운영자의 보상금은 각 복사기의 위치, 통상의 사용목적 등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따라서 각각의 경우 그 복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복사기가 복사점, 문방구, 백화점, 일반 할인매장, 사무기기판매점, 인쇄소, 대학, 우체국 기타 소매점 등 어떠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통상의 사용목적이 무엇인

가를 조사하여 보상금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1986년 후반부터 보르트(WORT)는 복사기사용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독일내의 각종 단체 들과 보상금에 대한 포괄계약(Gesamtvertrag)을 체결하였다. 현재 보르트(WORT)와 포괄계약 을 체결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독일소매점협회(Hauptverband des Deutschen Einzelhandels e.V.(HDE)), 독일사무업협회(Bundesverband Bürowirtschaft e.V.), 독일 중대규모기업협회 (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Mittel- und Großbetriebe e.V.(BBW)), 비트콤(BITKOM), 독 일복사 및 매체기술협회(Wirtschaftsverband Kopie & Medientechnik), 독일복사기운영자협회 (Verein der Betreiber von Kopiergeräten e.V.(VBK Dortmund)), 독일서점협회(Börsenverein des Deutschen Buchhandels), 각주의 서점협회(buchhändlerische Landesverbände), 독일저작 권보상금정산단체(Gesellschaft zur Abwicklung der Urheberrechtsabgabe(GAU)), 독일완구점 협회(Vereinigung der Spielwaren-Fachgeschäfte e. G.(Vedes)), 독일완구동호회 유한회사 (Spielzeug-Ring GmbH), 칼라사진유한회사(Colour Art Photo GmbH), 독일신문 및 잡지소매 상협회(Bundesverband des Deutschen Zeitungs- und Zeitschriften-Einzelhandels e.V.), 독일 신문사협회(Bundesverband Dt. Zeitungsverleger e.V.), 함부르크 소매상협회(Fachverbände des Hamburger Einzelhandels e.V.), 독일사무기술협회(Bundesverband Bürotechnik(BBT)), Ringfoto GmbH & Co. Alfo Marketing KG사, 독일인쇄업협회(Verband Druck e.V.) 및 Ewepa GmbH사 등이다.

보르트(WORT)가 위의 각 협회나 단체들과 포괄계약을 체결할 때 보상금의 결정에 있어서는 독일저작권법 제54 d조 제2항에 규정된 세 가지 요소들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①저작물의 사용을 위한 기기의 종류 및 위치, ②각 기기당 최소복제물의 수 및 ③위에서 말한 저작권법 제54 d조 제1항, 부록 II. 2.에 규정된 복사1면당 보상금의 액수(2001.1.1.현재 0,0103 유로) 등이다. 한편 보르트(WORT)와 포괄계약을 체결한 협회나 단체의 회원들은 독일연방보통법원의 판결9기에 따라 각 보상금액의 약 20%를 할인받게 된다.

# 3) 신매체에 관한 보상금액

2008년 12월 10일 VG WORT와 VG Bild-Kunst는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a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 e.V)과 뉴미디어 매체 보상금에 관한 포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복합기기(Multifunktionsgeräte): 25,00 EUR - 87,50 EUR.

프린터 : 5,00 EUR - 12,50 EUR.

스캐너(Scanner): 12,50 EUR

팩스(Faxgeräte): 5,00 EUR - 10 EUR (je nach Typ)

97) 예컨대 BGH vom 11.5.1973, GRUR 1974, 35 참조.

이 계약은 2008년부터 소급적용되어 2010년 까지 유효하다.

# (나) 사용료분배방법

# 1) VG WORT의 분배규정

분배규정에 명시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저작물 1개당 수익금의 분배비율은 다음과 같다(분배규정%)) A \$2).

- i) 원래 출판사와 관련이 없거나 더 이상 출판사와 관련이 없게 된 저작물(신문스크랩에 포함된 신문기고문도 이에 해당함)의 경우에는 저자에게 100%
  - ii) 출판사와 관련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자에게 70%, 출판사에게 30%
  - iii) 번역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자분배액 중 50%를 번역자에게 분배한다.

별도의 분배규정이 없는 한, 수익금은 각 권리자들에게 분배된다(분배규정 A §3). 만일 각권리자에 대한 분배액이 20마르크의 최저한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분배액은 매년말에 VG WORT의 사회기금(Sozialfonds)에 귀속된다(분배규정 A §4).

### 2) 학술부의 분배규정

학술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징수된 저작권사용료가 저자와 출판사에 각각 50:50의 비율로 분배된다. 다만 도서관수익금 중 출판사에 대한 분배 액은 촉진기금(Förderungsfonds)에 귀속된다.

#### 3) 분배규정의 변경

총회는 정관, 신탁관리계약, 징수위탁 또는 분배규정을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권리자들을 구속한다. 신탁관리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각 권리자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들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분배규정 등의 변경은 "WORT REPORT"를 통하여 공개되는데, 각 권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는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그에 상응하게 제한(예컨대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신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정관, 신탁관리계약 및 분배규정의 변경은 정관위원회, 평가위원회 또는 학술부위원회에서 준비한다. 위 세 개의 위원회는 자문기능을 담당한다. 위원회의 제안은 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토론한다. 정관에 정해진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제안은 총회의 의결을 위하여 제출된다. 총회 및 모든 직업군의 결의에 의하여 해당제안은 구속력이 있게 된다. 그밖에 이렇게 결의된 사항은 감독관청(독일특허상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과 분배규정은 언제든지 무상으로 열람 및 제공된다

<sup>98)</sup> Verteilungsplan der Verwertungsgesellschaft WORT (2002.5.18 개정).

# 4) 분배방법

VG WORT는 매년 중반에 각 권리자들에 대하여 은행송금 또는 계산수표 (Verrechnungsscheck)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를 분배한다. 그 외에 일부분야(예컨대 소위 "小放送權"(kleines Senderecht)의 경우)에서는 분배시기가 아닌 때에도 특별분배를 한다. 거래은 행의 계좌번호와 권리자의 주소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VG WORT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만 고려된다

### 제 4 절 일본

# 1. 개요

일본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은 1939년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다(중개업무법). 이법은 소위 플라게 선풍%)을 잠재우려는 데 그 제정 동기가 있었다. 1939년 중개업무법은 소설, 각본, 악곡, 가사의 분야에서 대리 혹은 신탁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에 한하여 저작권을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이는 저작권의 위탁관리를 위한 일본의 최초의 법규로 실제 운용은 업무실시단체에 대해서, 각본 분야에서 2개의 단체가 허가받은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분야 1단체로 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의 흐름에 따라, 지금까지의 엄격한 규제보다 완화된 규정을 통해 새로운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의 저작권등관리업무법(이하 '관리사업법'이라고 한다)이 2001년 10월에 시행됨에 따라 구중개업무법은 폐지되었다.100) 일본의 중개업무법 제1조는 중개업에 대하여 저작물의 출판・번역・홍행・방송・영화화・녹음 기타의 방법에 의한 이용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 또는 매개를 업으로 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저작권의 이전을 받아 타인을 위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저작물을 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은 이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그리고 중개업무법의 규율을 받는 저작물은 소설, 각본, 악곡을 수반하는 경우에서의 가

<sup>99)</sup> 이상정, "최근 일본의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소고,「계간저작권(통권81권)」, 저작권위원회, 2008(봄호), 69면, 주48; 涉谷達紀,「知的財産法講義Ⅱ」,有斐閣, 2005, 187면. 플라게 선풍이란 1930년대 독일인 W. Flage 박사가 외국 저작권 단체의 위임을 받아 일본 동경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무단연주·무단출판 등을 적발, 고액의 사용료를 청구하고 가처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여 당시 서구 저작권제도에 어두웠던 일본 사회에 커다란 ns제를 일으킨 것을 가르킨다. 플라게 선풍은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중개업법 제정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sup>100)</sup> 森下元文, "非一任型の著作權等管理業務に關する實態調査報告",「コピライト」,No. 561, 著作權情報センター, 2008.1, 17면.

사, 악곡의 4종으로 한정하였으며 중개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범위 및 업무집행 방법을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업무집행 허가를 받은 중개업무단체는 저작물 사용료를 정하여 문화청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위탁관리업체는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01)

중개업무법의 운영에 대해 일본의 중개업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102) 첫째, 저작권 관리사업에의 신규참가를 허가제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저작물 이용계약의 매개행위 등 원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낮은 행태까지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셋째, 적용대상 범위가 이용실태에 맞지 아니한 점, 넷째, 행정청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일방, 위탁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이 불충분한 점이다. 또한,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의 이용이 변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103) 그리고 오늘날의실정에 비추어 중개업무법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원활하고 신뢰성 높은 권리처리시스템구축요청과 상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104)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60년 이상 지켜온 중개업무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저작권관리에 있어서 독자적인 법규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 규정의 주요내용은 신규참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고치는 것, 중개업무법에서의 위탁자가 저작권등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준한다고할 수 있는 형태를 규제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여 그 이외의 관리 형태만을 저작권등관리사업의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 저작물의 이용 실태의 변화에 대응하고, 그 적용의 대상범위를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이 미치는 모든 분야(저작물 일반, 실연, 레코드, 방송, 유선 방송)로 확대하는 것, 위탁자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업무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물등의 사용료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설정되도록 사용료 규정의 인가제의 폐지에 아울러 사용료 규정에 관한 협의·재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중개업무법과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비교하여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5)

### [표 6] <저작권관리사업법과 중개업무법의 비교>

저자궈두과리사엇번	주개었무법
<u> </u>	0/11日1日

<sup>101)</sup> 한국저작권법학회,「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4.8, 93-94면 참 조

<sup>102)</sup> 이상정, "최근 일본의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소고,「계간저작권(통권81권)」, 저작권위원회, 2008(봄호), 69면, 주48.

<sup>103)</sup> 尾崎史郎, "著作權等管理事業法",「ジュリスト」, no. 1195, 有斐閣, 2001.3, 80면.

<sup>104)</sup> 佐藤惠太, "著作權の集中管理のあり方",「ジュリスト」, no. 1132,, 有斐閣, 1998.4, 51 円.

<sup>105)</sup> 일본문화청 자료(http://www.bunka.go.jp/chosakuken/kanrijigyouhou.html)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중개업무법
대상물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유선방송	「저작물」 (「저작물」의 범위는 칙령지정으로 되어 있고,「소설」,「각본」,「악곡을 수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사」,「악곡」이 지정되어있다)
대상 사업	「저작권등관리사업」 위탁자와 신탁계약 또는 위임계약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한 것) 에 기해, 저작물 의 이용허락 기타 저작권등의 관리를 행 하는 사업 주1) 위탁자가 수탁자에 의한 이용허락 시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것을 제외. 주2)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적관계, 자본관계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 는 경우를 제외.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 ①저작물의 이용계약에 대해 저작권자를 위한 대리 또는 매개를 업으로 하는 것. ②저작권의 이전을 받아 타인을 위한 저 작물을 관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신탁) 주) 사용료액의 결정방법이나 위탁자 수 탁자간의 관계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
참입규제	등록제	허가제
관리위탁 계약약관	신고제	허가제
사용료 규정	신고제	인가제
	<ul><li>(대 위탁자)</li><li>○관리위탁계약약관의 설명</li><li>○관리위탁계약약관의 공시</li><li>○재무제표등의 비치 등</li></ul>	(대 위탁자) 정함이 없다.
사업자의	(대 이용자) ○사용료규정의 공시	(대 이용자)
의무	○이용의 허락거부의 제한 ○정보의 제공	정함이 없다.
	(대 문화청장관) ○각종신고 (사업의 변경, 폐업등, 관 리위탁계약약관, 사용료규정)	(대 문화청장관)  ○허가 (업무실시, 업무변경) , 인가(사용료규정)  ○업무보고서 및 회계보고서의 제출
문화청장 관의 감독권한	○보고징수 ○입회검사 ○업무개선명령 ○등록취소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명령	○보고징수 ○임검 ○업무집행방법의 변경명령 기타의 명령 ○허가취소 ○업무정지명령, 업무제한명령
비고	협의, 재정에 대해 필요한 규정	

일본은 저작권보호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저작권관리단체의 운영을 등록제로로 전환하고 저작권사용료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관리시스템을 전환하는 등을 기초로 저작권관리환

경의 독점구도를 무너뜨리고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모색하고자 저작권관리를 위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 2. 집중관리 현황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시행으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등록제로 운영한 이후 중개업무법 시기에 4단체,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사)일본문예가협회, (협)일본극작가연맹, (협)일본시나 리오작가협회에 의한 저작권관리의 독점구도는 사라지고 집중관리단체가 35개 이상으로 늘 어났으며<sup>106)</sup> 소설, 각본, 음악 이외의 분야에서 새로운 관리사업자가 참가하고 동일분야에서 복수의 관리사업자가 등록되어 위탁자가 권리를 위탁할 수 있는 선택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관리사업자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107)</sup>

대표적인 관리단체를 보면, 소설등의 문예작품에 대해서는 (사)일본문예가협회가 집중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방송프로의 제작, 방송, 비디오화, 상영 등 주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한정하고 있으며 각본에 대해서는 (협)일본극작가연맹 및 (협)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가 각본가의 권리를 관리한다. 학술논문 등의 복사권에 대해서는 10여개 단체가 연합하여 (사)일본복사권센터를 설립되어 집중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주로 기업 내에서 행해지는 복사를 관리대상을 하고 있다.108)

문헌복사의 분야에 있어서 각사업자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과 관리방법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기업 등의 내부이용을 위한 복사에 대해서는 일본국내권리자의 저작물은 (社) 일본복사권센터가, 미국의 복사권관리단체인 CCC(Copyright Clearance Center)가 관리하는 저작물은 유한책임중간법인학술저작권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어 사실상의 업무분담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기업등이 외부에 제공하기 위한 복사에 대해서는 "(주)일본저작출판관리시스템"(Japan Copyright Licensing System Co., Ltd.;JCLS)109)과 유한책임중간법인 학술 저작권협회의 2단체가 업무를 행하고 있다.

#### 3. 법제도

<sup>106)</sup> http://www.bunka.go.jp/ejigyou/script/ipzenframe.asp(2008년 1월 1일 방문)에 의함.

<sup>107)</sup> 森下元文, "非一任型の著作權等管理業務に關する實態調査報告", 「コピライト」, no. 561, 著作權情報センター, 2008, 17日.

<sup>108)</sup> 일본의 현행 35개 이상의 집중관리단체 중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 (협)일본극작가연맹, (협)일본시나리오작가협회, (사)일본복사권센터, (사)일본레코드협회, (사)일본예능실연가단체협의회는 지정관리사업자이다.

<sup>109)</sup> JCLS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복사에 대하여 출판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에게 복사허락을 행하고, 복사이용료를 징수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사실 태에 의거하여 각 출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제도와 유사한 것이다.

일본은 2000년 11월 29일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을 제정함으로써, 1939년 이래 집중관리를 규율해 왔던 중개업법을 폐지하였다. 이로써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중개업무법하의 저작권위탁관리업은 대변혁을 겪게 되었다.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리위탁계약약관 및 사용료 규정의 신고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그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의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를 보호함과 함께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의 이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는사람은 저작권등관리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저작권등관리사업은 위탁자가인적관계, 자본관계 등에 대해 수탁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문부과학성령으로정하는 사람인 것을 제외하는 저작물등의 이용의 허락 그 외의 저작권등의 관리를 실시하는 행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영리성의 유무는 묻지 않지만 반복적이고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을 말한다(제2조 제2항).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저작권위탁계약에 대하여 관리사업자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저작권등을 이전받아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기타의 저작권등을 관리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위탁관리란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신탁이나 위임계약에서 위탁자가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것(비일임형)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sup>110</sup>) 아울러 동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위임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허락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료액의 결정권이 위탁자에 유보되고 있는 경우(이른바 비일임형의 관리)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관리하는 이른바 자기관리와 같은 관리형태로써 위탁자의 이익이 해쳐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동법 제3조는 관리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청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탁자의 보호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관리사업자의 업무규정에 대하여도 규율하고 있다(제 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111) 특히, 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급하고 있는 저작

<sup>110)</sup> 半田正夫,「著作權法概說(第11版)」, 法學書院, 2003, 306면.

<sup>111)</sup> 제11조(관리위탁계약약관)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관리위탁계약약관을 정하여 사전에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sup>1.</sup> 관리위탁계약의 종별(제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계약일 때에는 중개 또는 대리의 구별을 포함한다.)

<sup>2.</sup> 계약기간

<sup>3.</sup> 수수한 저작물 등의 사용료 분배방법

<sup>4.</sup>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보수

<sup>5.</sup> 그밖의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신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계약약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등관리

물등의 이용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체약강제규정을 두고 있어(제16조) 권리자와 이용자를 함께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 등의 권리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 거부의 요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동법 제23조 내지 24에서 사용료와 관련하여 협의 및 재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규정은 재정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복수의 관리단체가 경쟁상황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사용료가 결정될 것이나 관리사업자간에 적절한 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고액의 사용료가 설정됨으로 저작물등의 원활한 이용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것이라 한다.112) 그리고 문화청장관의 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보고징수 및 입회검사에 대한 규정(제19조), 관리위탁계약 또는 사용료규정 및 업무운영 개선명령에 대한 규정(제20조), 관리사업자의 등록취소 등의 권한(제21조)을 규정하여 문화청장관이 관리사업자를 감독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동법 부칙 제7조에서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 결 과에 기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3년이 지난 후 개정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의견모집의 결과를 보면 동일분야에 일임형의 관리사업과 비일임형의 관리사업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에 따른 허락절차의 복잡 화에 대하여 상당정도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관리위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일임 형 관리라는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은 민간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사용료가 명확하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리위탁계약약관에 의하지 아니하면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사용료 규정)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료 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문화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sup>1.</sup>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 이용구분(저작물 등의 종류 및 이용방법의 구별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제23조에서도 같다.)마다의 저작물 등의 사용료 금액

<sup>2.</sup> 시행일

<sup>3.</sup> 그밖의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사용료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단체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에 관계되는 사용료 규정의 개요를 공표하여야한다. ④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사용료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보제공)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저작물 등의 제호 또는 명칭 그 밖의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저작물 등마다 취급하고 있는 이용방법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열람) ①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매사업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그 사업년도의 저작권등관리사업에 관계되는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그 밖의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서류(제2항 및 제34조 제2호상의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를 작성해서 5년간 사업소에 비치하여 두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시간중에는 언제라도 재무제표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sup>112)</sup> 郷治友孝, "著作權等管理事業法の解說(後篇)",「コピライト」, no. 478, (社)著作權情報センター, 2001.2, 26면.

않아 이용자가 불편을 입고 있고, 또 규제를 받고 있는 관리사업자와의 적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폐해가 검증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비일임형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임형 관리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임형 관리사업자가 비일임형의 관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 중개업무법에 근거한 질서변경에 따른 당혹감 등도 있었다하고 특히, 이용자측에서 비일임형과 일임형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강화를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비일임형 관리사업을 규제하는 경우 규제방법에 의해 광범위한 사업자에게 규제를 확대하거나 관리사업자가 비일임형 관리사업을 행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원활한 이용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리사업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113)

# 4. 일본복사권센터

### 가. 개요

일본저작권법은 일본복사권센터**114)**에 특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단지 종전의 "저작권에 관련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115)

일본복사권센터는 저작권자의 복사 등에 관계되는 권리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로 부터 복사사용료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집중적 권리처리를 행함으로써 허락에 관 계되는 곤란이나 불편을 해소하여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적정한 이용을 실현하는 것을 그 사업으로 한다.

저작물의 복사(copy)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116)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117)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개별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sup>113)</sup> 자세한 내용은,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報告書」, 日本文化廳, 2000.1 참조.(http://www.bunka.go.jp/chosakuken/singikai/pdf/singi\_houkokusho\_1801.pdf)

<sup>114)</sup> 社団法人 日本複寫權センター: Japan Reprographic Rights Center (JRRC). (http://www.jrrc.or.jp)

<sup>115)</sup> 이 지위는 2000년에 전면개정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 의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 변경되어, 종전의 사실상의 독점적 지위는 철폐된 상태이다.

<sup>116)</sup> 일본 저작권법에는 제30조 - 제50조에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개인적 또는 가정 내의 이용(제30조), 일정한 조건과 범위에서의 도서관등에서 이용자에게 복사를 제공(제31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의 이용(제35조) 등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의 범위를 초월하는 이용은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위법한 것이 된다.

<sup>117)</sup> 저작권자는 타인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일본 저작권법 제63조).

따라서 복사(copy)에 관한 권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절차를 통하여 저작물의 복사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저작권 집중관리 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1991년 9월에 일본복사권센터가 저작자와 13개 저작권 단체에 의하여 발족되었다. 발족과 함께 동 센터는 저작자의 복제권에 의한 복사권의 집중처리기구로서 복사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업무을 개시하고, 1998년 10월 1일에는 민법상 사단법인체로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았다. 2001년 11월 14일 著作權等管理事業者登錄을 하였으며, 2002년 3월 7일에는 指定著作權等管理事業者指定을받았다.

# 나. 업무의 범위

2008년 6월 현재 저작자단체연합, 학술저작권협회,<sup>118</sup>) 출판자저작권협의회, 신문저작권협의회<sup>119</sup>) 4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일본복사권센터는 저작권법 제21조에 규정된 저작자의 복제권(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sup>120</sup>)할 권리를 독점한다)과 동법 제23조에 규정된 공중 송신권의 복사에 따른 팩시밀리 송신권에 의한 권리를 위탁받아 행사한다. 일본복사권센터의계약대상 저작물은 동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인 바, 그 복사 대상범위는 소부분, 소부수의 복사로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복사의 대상범위는 출판물의 소부분, 소부수로, 저작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사용료규정 제2절),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 및 그 복사물의 양도(동 3절), 및 저작물의 Fax 송신(동 제4절)이고, 일본복사권센터가 관리위탁을 받은 저작물이 복사이용허락계약의 대상이 된다.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 및 그 복사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학술저작권협회과 신문저작권협의회가 관리위탁을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Fax송신'에 대해서는 신문저작권협의회가 관리위탁을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Fax송신'에 대해서는 신문저작권협의회가 관리위탁을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는 일본복사권센터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본복사권센터는 (i) 광범위한 저작권자로부터 복사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위탁받거나 양도받은 학·협회단체, 저작자단체, 출판자에게서 권리위탁이나 사무위탁을 받아 (ii) 그 권리를 관리하고 관리저작물 이용자(여기에는 개인 등의 개별 이용 희망자, 도서관, 대학, 행정기관, 기업, 복사업자 등이 포함된다)와 복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한 뒤, (iii) 이를 동 센터의 구성단체인 각 위탁자 단체를 경유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121)

이용자는 사전에 센터와 체결한 저작물복사이용허락계약 하에서 복사 등을 행하며, 사용료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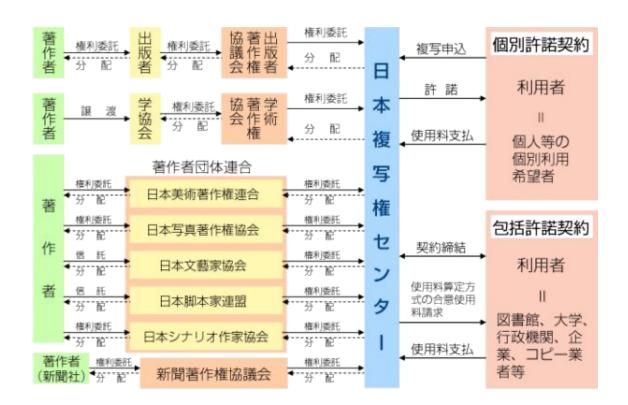
<sup>118)</sup> http://www.jaacc.jp

<sup>119)</sup> http://www.ccnp.jp

<sup>120)</sup> 複製, 印刷, 寫眞, 複寫, 錄音, 錄畵 기타의 방법으로 有形的으로 再製하는 것을 말한다.(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15호)

<sup>121)</sup> http://www.jrrc.or.jp/about/index.html#object(2008.12.20 방문).

정에 따라 일정기간(개별허락계약의 경우에는 복사 등의 정도) 마다 사용료를 지급한다. 사용료는 센터에서 센터를 구성하는 각 위탁자단체를 경유하여 저작자에게 분배된다. 한편, 동 센터는 현재 도서관 등에서의 팩시밀리 서비스 또는 출판물의 지면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에 축적하고 이를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화면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프린트 아웃하는 이른바, 전자도서관 체제에 대한 대응이 중심적 연구사항으로 알려진다.



### 다. 사용료 결정방법

# (1) 이용허락 계약방식

일본복사권센터도 복사사용료의 결정은 이용자들과의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 또는 고정적인 가격은 없다. 다만 복사이용 허락계약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저작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이용허락계약에는 '개별계약'과 '포괄계약'의 2종류가 있고, 제2절 (3) 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출한다. '개별허락'이란 복사 등을 할 때마다 이용허락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하여 '포괄허락'이란 이용자의 복사실태에 따른 계약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일반적으로 1년)에는 사용료규정에 따라 복사 등에 대하여 복사 등을 할 때 마다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기업·단체 등의 복사실태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이 포괄허락방식에는 '실액방식', '정액조사방식', '간이방식'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이용자는 다음의 4방식(개별 1방식, 포괄 3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복사권센터와 계약을 체결한다.

	개별허락	복사 등 행할 때마다 복사권센터의 허락을 얻어 사용료를 지급 하
		는 방식.
		계약체결 후, 이용자는 출판물 복사 등의 전기록을 모아 일정기간마
포	실액방식	다 복사권센터에 보고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
괄		절차 등의 내용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이용자를 향한 방식.
허		당해 기업 등의 수개의 장소(예, 본사, 공장, 영업장 등)에 일정기간
락	정액조사방식	조사를 행하여 년간 사용량을 추계하여 사용료를 결정하 는 방식.
		조사시 이용자의 협력을 구한다.
	간이방식	기업 등의 복사실태에 따라 년간사용료계산식(종업원수, 기기대수 등
		을 기초로 한 4계산방법) 주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미리 년간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식.
		계약후에는 기록 보고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편리한 방
		식이다.

또한 저작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복사, 양도에 관한 복사이용허락계약에도 '개별'과 '포괄'의 2종류가 있고, 「使用料規程」제3절 (3) 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출한다. 저작물의 Fax송신에 관한 복사이용허락계약에는 '개별'과 '포괄'의 2종류가 있고, 「사용료규정」제4절 (3) 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산출한다.

# (2) 사용료 산출방식

저작물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복사의 기본이 되는 사용료는 1면 2円(消費稅 別도)로 한다. 다만, 포괄허락계약간역방식에 따라 계약한 이용자는 종업원수와 기기의 대수에 따라 년간사용료를 산출한다.

개별허락과 포괄허락 중 실액방식은, 이용자가 복사한 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복사량에 따라 1면당 2엔으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포괄계약 중에 정액조사방식은, 샘플조사에서 추계된 복사량에 따라 1면당 2엔씩 계산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출한다. 포괄계약 중에 간이방식은 종업원수와 기기대수에 따라 년간사용료를 산출한다. 이용자는 다음 4가지 계산방법에서 각 이용자의 복사 등 실태에 따라 적합한 하나를 선택하여 연간사용료를 계산한다. i) 이용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복사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인 추정 복사량을 복사권센터에 자율 신고하여, 그에 따라 복사권센터와이용자가 협의하여 연간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식, ii). 연간사용료=복사기의 총 대수×2.500 때×2엔으로 산출하는 방식, iii) 연간사용료=종업원의 총수×20때×2엔으로 산출하는 방식, iv) 연간사용료=(종업원의 총수×20엔)+(복사기 총대수×2.000엔)으로 계산하는 방식.122)

### 라. 사용료 분배

센터의 분배규정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위탁자단체를 통하여 분배를 한다

# (1) 분배를 위한 실태조사

개별허락이나 포괄허락 실액방식의 경우에는 사용된 저작물이 명확하여 분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포괄허락 계약의 경우에는 어느 저작자의 저작물이 사용되었는가 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를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포괄허락 계약·간이방식의계약서 제5조(복사 실태조사)에 따라 업종별 등의 기준으로 기업 등의 협력을 얻어 실태조사를 행한 자료를 작성하여 그것에 기초하여 분배를 행한다.

### (2) 분배방법

복사권센터가 징수한 사용료는 동 센터를 구성하는 위탁자 단체를 경유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된다. 이 때 동 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료의 30퍼센트 한도에서 수수료를 공제한다. 동 센터의 분배규정은 매년 말까지 전년도 징수액에 대해 분배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5. 일본저작출판관리시스템

#### 가. 개요

2001년 1월 25일 일본에서는 다수의 출판자가 참여한 가운데 '自然科學書協會'와 '日本医書出版協會'의 협력과 지원 하에 복사권의 집중관리를 목표로 한 "(주)일본저작출판관리시스템"(Japan Copyright Licensing System Co., Ltd.; 약칭을 "JCLS"라고 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약칭을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단체가 설립되었다. JCLS는 2007년 11월 1일 저작권등관리사업 법에 의한 저작권등관리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았다.123)

JCLS는 영리법인(상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복사권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복사이용자의 편의와 저작권자의 권리 및 출판자의 이익보호가, 궁극적으로는 문화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일본복사권센터나 우리나라의 (사)한국복사전송권협

<sup>122)</sup> 다만, 연구비가 매상고의 5%인상인 기업은 iii)의 방식에서 20매를 24매로, iv)의 방식에서 20엔을 24엔으로 환산하고, 연구비용이 1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iii)의 방식에서 20매를 16매로 한다.

<sup>123)</sup> 登錄番号07002.

회'의 목적과 기본바탕에서 일치한다.124)

# 나. 업무내용 및 업무방법

JCLS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외의 복사에 대하여 출판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에게 복사허락을 행하고, 복사이용료를 징수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사실태에 의거하여 각 출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125) 그 유형은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CCC)의 제도와 유사하다.126)

JCLS는 복사권자인 출판자가 서적·잡지에 관련된 개별적으로 설정한 복사이용단가(서적은 면당 단가, 잡지는 면당 단가 또는 논문당 단가)와 그 밖의 소정의 정보를 등록 받으며 위탁을 받지만, JCLS는 미국의 저작권처리센터처럼 이용단가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JCLS는 현재 자연과학계뿐만 아니라 법률, 경제,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서적 47,000여점, 잡지 600여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JCLS는 위탁받은 출판물의 이름 및 코드, 잡지 코드, 복사이용 단가, 복사조건 등을 JCLS의 홈페이지상으로 공표하고 있다.127) 또한, 현재로서는 어문저작물의 위탁을 받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저작물(미술, 음악, 캐릭터 등)은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 다. 이용허락방법

JCLS가 체결하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은 개별복사이용등허락계약, 년간복사이용등보고허락계약 및 년간이용포괄허락으로 구분하다.128)

첫째, 개별복사이용등허락계약은 주로 개인의 소규모 복사의뢰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로, 이용자가 복사이용할 때마다 복사할 출판물의 이름, 범위, 부수를 사전에 JCLS에 신고하고 위탁된 복사단가를 기초로 복사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사이용은 1회마다 복사이용자가신청하되, 계약서는 필요없다.

둘째, 년간복사이용등보고허락계약은 주로 문헌복사업자, 기업 및 도서관 등을 이용대상자로 하는 형태로, 복사이용에 적정한 년간계약을 사전에 체결하고 1개월 또는 3개월마다 당해 기간중에 복사이용한 모든 출판물의 명칭, 범위, 부수를 특정한 보고서로 제출하고, 동시에 위탁된 복사단가를 기초로 복사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사이용자는 년간계약시에 복사

<sup>124)</sup> 한국복사전송권세터, 외국의 복사·전송권 관리실태 조사연구, 2001, 75면.

<sup>125)</sup> http://www.jcls.co.jp/(2008.12.20 방문)

<sup>126)</sup> 한국복사전송권세터, 외국의 복사·전송권 관리실태 조사연구, 2001, 75면.

<sup>127)</sup> http://www.jcls.co.jp/(2008.12.20 방문)

<sup>128)</sup> http://www.jcls.co.jp/(2008.12.20 방문)

이용자의 규모에 따라 이용보증금을 ICLS에 예탁하여야 한다.

셋째, 년간이용포괄허락계약은 주로 기업을 이용대상자로 하는 형태로, 복사이용에 대하여, i) 복사이용자가 년간의 이용상황, 이용예정(출판물의 종류별 분류별마다의 복사이용매수)을 사전에 JCLS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에 위탁출판물의 종류별 분류마다의 평균 복사단가를 곱하여 년간복사이용료를 JCLS가 추정하거나, ii) 기업내용 및 기업규모에 따라 JCLS의 추정으로 년간복사이용료를 산정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복사이용료를 JCLS에게 사전지급하는 방식이다. 복사이용 기업에게 복사실태조사를 의무로 부과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년 간복사이용료를 수정하는 방식도 있다.

# 라. 복사이용료의 분배

JCLS는 복사이용계약 방식에서, i) 개별복사이용등허락계약 및 년간복사이용등보고계약은 그 실액을 출판자별 및 출판물별로 집계하여 각 위탁자에게 분배하고, ii) 년간복사이용등포 괄허락계약은 복사실태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논리적 방법에 따라 각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JCLS는 위 계약에서 각 위탁자에 대한 분배액중 일정 수수료와 소송(claim) 기금을 공제한 후에 분배를 한다.129)

# 6. 유한책임중간법인학술저작권협회(JAACC)

유한책임중간법인학술저작권협회(Japan Academic Association for Copyright Clearance, Inc: JAACC)은 학술연구 또는 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포함한 회원단체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학술저작물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여 회원과 이용자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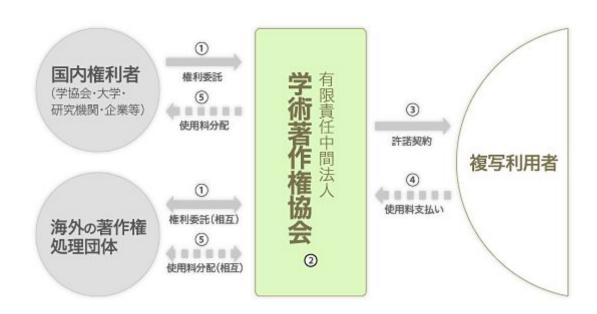
JAACC는 학술저작물의 복제와 같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 및 관리의 위탁·대행 업무를 담당하며, 주로 학술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복사사용료의 징수대행 및 그 권리자에 대한 분배업무와 그 부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JAACC는 웹상에서의 위탁저작물의 복사허락을 행하고 있다. WEB복사허락시스템은 JAACC'에 관리 위탁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사허락을 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복사허락 신청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등록 또는 JAACC와의 계약이 필요하다.130)

<그림: JAACC WEB복사허락시스템>

<sup>129)</sup> http://www.jcls.co.jp/(2008.12.20 방문)

<sup>130)</sup> 이용허락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http://copyright.jaacc.jp/guide/guidance.pdf 참조 (2008.12.20방문)



### 제5절 우리나라

# 1. 개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행사의 용이성, 권리자 확인의 용이성, 권리자와 이용자의 교섭의 용이성 등 집중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신탁하는 자발적 집중관리와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비자발적·강제적 집중관리가 있다.

전자는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시 저작물이용자의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동법 제75조의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 동법 제76조의 디지털음성송신 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 동법 제82조의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 동법 제83조의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의 보상금 지급, 동법 제83조의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신탁관리단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법 시행 이후이며, 현재 12개 단체가 존재한다. 131)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와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 크게

<sup>131)</sup>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http://www.kofoco.or.kr)와 한국음악산업협회 (http://www.miak.or.kr) 그리고 최근 출범한 한국문화콘텐츠산업협회를 포함시켜 15개로 볼수도 있다. 한국문화콘텐츠협회는 문화예술과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조망하고 접근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 4일 공식 출범하였다.

구분	단체명	신탁의 대상	허가년 도	주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1988	http://www.komca.or.kr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 회	문예·학술저작권	1989	http://www.copyrightkorea. 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영상시나리오	2001	http://www.scenario.or.kr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저작물의 전송권	2005	http://www.kfpa.net
저작권	한국영상산업협회	비디오, DVD, VCD 공연권	2005	http://www.kmva.or.kr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작가의 저작권	1988	http://www.ktrwa.or.kr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디지털문화콘텐츠	2005	http://www.kocca.or.kr
	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	2000	http://www.copycle.or.kr
	한국언론재단	뉴스저작권	2006	http://www.kpf.or.kr
저작인접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의 권리	2003	http://www.kapp.or.kr
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실연자의 권리	2000	http://www.fokapo.or.kr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로써 이는 다시 저작물 분야별로 세분된다. 여기에는 음악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영상저작물에 관한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제작자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뉴스저작권에 관한 한국언론재단이 있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법 제7장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위 라관리업체로 저작권을 신탁 받아 관리하는 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집중관리단체이다. 둘째, 저작인접권 부문에서의 단체이다. 여기에는 실연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음원제작자의 권리에 관계된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저작권법 제75조, 제76조와 제82조, 제83조에 의거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 및 송신사용에 대한 사용료청구권을 각기 행사할 수 있는 지정단체이다.

한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공중복사기에 의한 복사가 사적사용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 권리처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의 복사권센터를 모범으로 한 것인데132) 일본 복사권센터와 달리 전송권까지 권리처리를 하겠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 2. 어문저작물별 집중관리단체

#### 가. 문예ㆍ학술저작물 집중관리

문예·학술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에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KOSA: The Korean Society of Authors)가 있다.

KOSA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익을 옹호하며 공동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가 창설되기 이전에는 출판사에서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출판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문예 및 학술분야의 저

한국방송실연자협회 방송실연자의 권리 2002 http://www.kbpa.kr

<sup>132)</sup> 일본 복사권센터(Japan Repro-graphic Rights Center; JRRC)는 ① 널리 저작권자로부터 복사 등에 관한 권리행사의 위탁 또는 사무의 위탁을 받아 이것을 관리하며, ② 이용자와의 사이에 복사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복사사용료를 징수하며, ③ 징수한 사용료를 권리위탁자에게 분배한다. 복사권센터가 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 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인바, 그 복사 대상범위는 소부분, 소 부수의 복사로서 일반 공중에게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4년 5월 한국저작인협회로 발기하여 1988년 7월 문화공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89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았다. 2007년 총회원수는 1,909명이며, KOSA는 회원들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방송화하거나 멀티미디어화하는 등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고 있다. 2006년도 한해 6,066,000,000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KOSA는 CISAC(국제저작자, 작곡가 협회 총연합)에 1994년에 가입하였으며 IFRRO(국제 복사권기구연맹)에도 가입을 추진하는 등 국제저작권단체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 나. 출판문화저작물 권리의 집중관리

출판문화의 보호를 위한 단체에는 한국복사전송권협회(KRTRA: Korea Reprographic and Transmission Rights Association)가 있다.

KRTRA는 저작권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문헌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KRTRA는 2000년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그해 11월 어문저작물의 복사·전송에 관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 2003년10월 저작재산권자단체로 지정되었다. 주요사업은 저작·출판권자로부터 저작물의 복사와 전송에 관한 권리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이용자와 복사·전송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복사·전송에 대한 사용료를 회원단체를 통하여 저작·출판권자에게 분배한다. 그리고 저작물의 국민적 이용확대와 조사연구, 출판,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저작물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 그 외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한국복사전송권협회 정관 제4조(사업) 2호 내지 5호)을 추진한다. 총회원은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학술총단체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사 회원을 포함하여 개별회원으로 학회 및 출판사 338개, 142명의 개인회원 되어있다. 2008년 한해 신탁사용료 340,000,000원 및 도서관보상금 30,000,000원을 합하여 약 370,000,000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 3. 집중관리에 대한 수수료 및 사용료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제105조 4항),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5조 제5항). 수수료는 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용계약에 의해 징수한 사용료에서 포함된 일정한 관리수수료를 말하는 것이다. 이 관리수수료를 제하고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료와 수수료는 권리자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저작물이 일상생활과 산업에 폭넓게 이용됨에 따라 사용료가 수수료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므로 이를 수수료와 함께 저작권법에서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사용료율 승인도 법에 규정되었다고 한다.1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수료 숭인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105조 제6항)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05조 제8항). 이는 최근의 온라인 음악시장 신장에 따라 신탁관리업체의 수익이 급상 승함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간 내에는 수수료율 등을 조절하지 못해 결국 권리자 등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생김에 따라 기 승인된 수수료 요율 등을 적절히 조절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고 한다.134) 그렇다면 이 조항은 온라인 음악시장에 한정하여 수수료율을 조절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저작권자등과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한 수수료와 사용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수수료나 사용료 같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sup>133)</sup> 심동섭, 전게논문, 「계간저작권((통권76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겨울호), 58면.

<sup>134)</sup> 심동섭, 전게논문, 「계간저작권((통권76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겨울호), 60면.

# 제3장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 제1절 서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함으로써(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조건과 범위에 관한 한 전적으로 계약당 사자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두고 있다. 따라서 사용료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민법의 일반원칙, 즉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민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이들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문저작물의 복사사용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용료 규정(안)을 다른 나라 집중관리단체의 것과 비교한 후, 그 결과를 각 나라의 경제규모, GNP 및 평균물가의 비교수치를 고려고이를 기초로 국내 실태조사의 결과를 감안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송허락의 경우, CCC에서는 전자적 과정 자료제공(Electronic Course Content Service:ECCS)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적 자료제공에 관하여 절차료(processing fee)와 접속료(access fee)만을 받고 있고 접속에 의한 복사료는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 또 독일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디지털화하는 것 등을 복사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을 뿐이고 전송에 관한 별도의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수의 집중관리단체는 전송 서비스를 위해서는 디지털 복제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디지털 복제를 복제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디지털문헌 정보서비스는 출판사가 출판권을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직접 권리처리를 한 후 어문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최종이용자에게 개별계약 또는 포괄계약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예컨대, 법률분야의 경우, LEXIS, Westlaw, C.H.Beck 등).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작자나 출판사가 아닌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문헌정보제공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외국의 관련 서비스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산출근거는 본 연구를 위한 직접적 참고자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의 전송사용료는 전송의 이용방법, 저작물의 종류, 이용자의 주관적 효용, 저작물의 디지털 전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 제2절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사용료 징수 및 분배제도의 개선방안

# 1.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방법

### 가. 이용허락 방법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물 전송에 관한 허락계약은 크게 개별허락과 포괄허락을 생각할 수 있다. 각국의 경우에도 이들 유형을 선택하여 또는 동시에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 나. 사용료의 징수방법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대분하여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용료 산정기초로 되는 복사·전송실적에 대하여 하나의 픽션을 설정하여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이다. 이에는 출판물의 연간 구입료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법, 복사·전송 페이지에 맞추어 금액을 결정, 복사·전송실태의 추출조사에 이하여 전체 복사·전송매수를 추정한 뒤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다른 하나는 정확한 복사전송실태에 토대를 두어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미국에서는 저작물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다), 저작물 이용자가 복사실전송적을 자진신고를 통하여 사용료액을 결정하는 방법 등이 고려된다.

각국의 경우에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국가는 포괄징수를 하는 국가, 미국과 같이 개별징수를 하는 국가, 독일과 같이 포괄징수와 개별징수의 어딘가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 등 다양하다. 사용료의 징수는 허락계약 형태에 따라 개별징수와 포괄징수로 나누어질 수 있는 바, 이들 징수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사용료의 분배방법

집중관리단체는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이용자와 직면하게 되지만 저작이용료의 분배를 둘러 싸고는 권리자와 직면하게 된다.

만약 저작자가 수입의 배분이 시장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실제 복제·전송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집중관리제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정확한 복제·전송량에 상응하는 이용료가 수집, 분배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집중관리단체들은 샘플링 또는 통계조사를 통해 통계추정치를 사용하여 분배하는 등의 노력

을 기울여 저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게 된다.

권리자에게 분배되어지는 시스템은 대체로 권리자 개인에게 구체적 복제·전송저작물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배되어지는 방식과 표본 조사에 입각해서 구체적 복제·전송저작물과는 무관하게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위탁한 집중관리단체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실액(Full Reporting), 정액(Objective Availability), 간이 방식(Sampling)의 3가지가 있고, 후자는 노르웨이 등의 북구 유럽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확장포괄계약'(collective blanket license)을 통해 집중관리단체에 가입한 저작자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방식이다.

이 중 실액방식은 이용자 스스로 작성한 모든 복사기록을 근거로 수입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가 모든 기록을 유지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단체 스스로도 기록을 처리하기에는 과도한 행정비용, 특히 컴퓨터 관련 기술과 H/W, S/W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 일반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 CCC는 거래이용허락계약(Transactional Licensing)의 경우 실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권리관리시스템인 Rightslink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짐에 따라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허락(Academic Permissions Service)의 경우만 하더라도 학생용 수업재료(course packs)를 복제함에 따른 권리처리 요청의 75% 이상을 24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135)

定額 방식은 직접 이용자로부터 복제·전송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전제로 시장에서 존재하는 저작물은 언젠가는 복제·전송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가 새로운 저작물의 출판을 RRO에 신고하게 되면 저작물에 대한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물론 실제 복사·전송되는 양과 저작자가 받게 되는 수입과 정확한 상관관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제일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이점이 있으며, 이용허락계약의 유형 중 강제허락 유형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채택되어진다. 나라별로는 독일136)에서 사용하고 있다.

간이 방식은 통계에 의해 모집단의 2~5% 정도에 해당되는 이용자를 골라서 정해진 기간마다 실제 복사·전송량을 통보토록 하고 이에 근거, 저작자에게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실액방식과 비교할 때는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서의 타당성과 정확성은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영국<sup>137</sup>이 이런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sup>135)</sup> http://www.copyright.com 참조.

<sup>136)</sup> 저작자와 출판사가 모든 출판물을 VG Wort에 신고하면, VG Wort는 저작물의 종류, 복사 장소에 따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출판사는 인쇄한 양에 따른 대가를, 과학류 책이나 잡지의 저자는 신고한 책이나 논문 페이지에 대해 일정액을 지급받게 된다.

<sup>137)</sup> 영국은 실제 이용자에게 실액방식과 간이방식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CLARCS (Copyright Licensing Agency Rapid Clearance Service)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통해 권리자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할 수 있는 요금과 조건을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실액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모집단의 2%에 해당되는 이용자 대상을 CLA가 선정, 교육 기관의 경우에는 6주, 민간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4주간의 샘플링 기간 동안 이용자가 모든 복제

마지막으로 북구 유럽이 택하고 있는 배분 방식은 간이 방식과 같이 모집단 가운데 일정 비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기간 동안만 데이터를 수집하되<sup>138)</sup> 복사·전송되어지는 출판물, 저자, 출판사 등을 특정하지 않고 복사·전송되어지는 유형과 그에 따른 양만 측정, 수입액을 '일괄배분'(collective distribution)하며, RRO가 개별 집중관리단체에 수입액을 배분하면, 이를 집중관리단체가 자신에게 저작물 위탁관리를 맡긴 개별 저작자에게 다시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정액방식과 마찬가지로 저작자나 실제 복제된 저작물과 개별 권리자가 받는 대가사이의 상관관계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거두어들인 사용료를 특정 부류의 저작물 홍보나저작권 침해 단속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어떻게 내부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집중관리단체에게 맡겨진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집중관리단체를 선택하지 않은 저작자는 이용자의 개별 사용에 따른 개별적 대가를 징수할 권리를 여전히 유보하게 된다.

### 2. 전송사용료의 설정 방안

# 가. 전송사용료 기준에 관한 고려사항

본래 저작물의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에 가장 합당한 가격결정은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 복사·전송의 특성상 저작자와 복사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복사·전송사용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전송사용료 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이론적인 근거는 불충분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출판물의 비용을 토대로 그중 일정 부분을 복사·전송사용료로 산정하는 등 논리적인 근거는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저작자와 사용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준안의 제시를 통하여 양 당사자에 협상에 의한가격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다.

#### 나. 이상적인 전송사용료

# (1) 개요

사용자와 저작자 및 출판자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①합리적인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고, 사용자의 ②실제 사용량이 적절히 모니터링 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전송사용계약모델이

를 보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복사물을 추가로 복사하여 보관토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계추정치에 근거한 복제량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는 간이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138) 보통 매4~5년 이상 정해진 영역에 대해 시장 조사를 할 정도로 간이 방식에 비해 시장 조사의 횟수는 훨씬 덜하게 된다.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실제 전송이용량에 기준 사용료를 적용하면 합리적 인 총 사용액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용료 기준은 전송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사용료 계약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즉, 전송사용료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근거가 보편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전송사용료는 전송사용료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나 전송사용료 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문저작물 전송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자는 주로 콘텐츠 제공자(Contents provider)인 저작자 및 출판자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이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송서비스공급함수와 전송이용자의 수요함수가만나서 결정되는 가격이 그대로 전송사용료 시장의 가격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송사용료 산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저작권자 및 출판자의 경제적 이윤 손실;
- 전송이용자의 전송이익
- 전송제품의 품질, 전송조건
- 이해당사자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

#### (2) 저작자 및 출판자의 경제적 이윤 손실액 기준

전송에 의한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경제적 손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송사용료 계약제도의 기본취지와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경제적 손실의 얼마만큼이 보상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송량에 상응하는 저작물의 시장가격 또는 저작물의 생산비용을 저작자 및 출판자의 손실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저작자 및 출판자의 입장에서의 접근방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저작물의 시장가격을 "①저작물의 시장가격 = ②저작권료+③출판사 이윤+④출판사의 생산비+⑤유통비용+⑥유통이윤"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물의 시장가격이 모두 저작자 및 출판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중에서 '②저작권료+③출판사 이윤' 부분과 ④출판사의 생산비 부문, 즉 출고가격이 저작자 및 출판자의 금전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139) 여기서 출판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판,

<sup>139)</sup> 실제로는 저작자 또는 출판자의 인지도 향상, 규모의 경제에 의한 초과이윤의 획득 가능성 등 금전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도 존재한다. 또한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이 감소됨으로써 다양한 저작물의 발표가 촉진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총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 출판산업의 경제적 손실은 출판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출판산업의 전후방

제판 등의 비용은 고정비용으로 일종의 매몰비용(sunk cost)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전송사용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전송사용료 기준안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저작자 및 출판자가 전송로 인해 획득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실현되지 못한 이윤으로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다면, 복사사용에 의한 저작자 및 출판자의 경제적 이윤 손실액은 '②저작권료+③출판사 이윤'으로 정의되어야할 것이다.

# (3) 이용자의 전송이익

전송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주체는 주로 수신이용자와 전송시장에서의 공급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전송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된 전송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인데,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적은 금액 만을 투자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송사용자들이 얻는 이익은 정품 출판물에 대한 대체재로서 디지털화된 복사물을 원품과 동일한 품질의 저작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가져다 주는 편익도 누릴 수 있다. 시장가격에서 복사비용을 제한 부분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득임.

### (4) 전송제품의 품질 및 전송조건

전송이용자가 전송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송이익을 계산하는 데는 전송된 제품의 품질 및 전송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어문 저작물의 품질 및 이용은 전송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만일 전송된 디지털 파일에 어떠한 보안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 가능하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송신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자권자의 합법적 이익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은 매우 엄격한 조건 및 고액의 사용료 하에 이용을 허락할 것이다. 예컨대, 운문이나 산문과 같은 어문저작물은 그 저작물의 특성상 다운로드가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정가 보다는 높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주로 전송사용료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지만 pdf파일을 통한 인쇄출력의 방법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합리적인 전송사용료를 설정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방법에 있을 것이다.

# (5) 이해 당사자간의 공정한 게임의 룰

전송사용료의 기준안의 산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간의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와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다. 즉 아무리 합리적이고 적절한 전송사용료가 제시되더라도 전송사용자가 저작권 보호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거나 저작권자(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사용자의 편의와 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전송사용료 계약제도를 통한저작권산업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전송사용료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가 사용자의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계약을 통해 저작자 및 출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총후생을 증진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사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던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대한 반감보다는 정당한 사용을 통해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저작자 및 출판자들은 과도한 사용료를 기대하기 보다는 건전한 어문저작물 전송서비스를 통해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전자책(e-book)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 가. 서언

e-book은 책이라는 기존의 인쇄매체를 통해 유통되던 텍스트 기반의 정보 또는 메시지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이다. e-Book은 기존의 종이책 대신 XML 또는 PDF를 활용하여 만든 디지털화된 책을 PC나 단말기에 다운 받아 뷰어(viewer)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콘텐츠 비즈니스의 하나이다.

콘텐츠 부문의 주요 업체는 작가와 온라인 출판사,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사들로서 기존 인쇄물의 경우 작가가 콘텐츠의 제1차 제작자(저작권자)라면 오프라인 출판사들(출판권자)은 콘텐츠를 편집, 출판하고 유통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출판사가 기존에 종이책으로 출간된 서적을 e-book으로 판매하려면 작가 및 출판사에게 각각 인세와 판권비와 같은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e-Book으로 인해 1차 콘텐츠 제작자인 작가는 기존의 출판에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이 추가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 상승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디지털 온라인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책을 공급하고 과금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

로도 저작권자가 온라인 출판사와의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 출판사들은 자사가 판권을 보유한 기존의 콘텐츠를 직접 e-book으로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e-book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오프라인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e-book 서비스를 추구하는 오프라인 출판사는 많지않으며, 오히려 기존의 오프라인 출판사들은 상호 위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온라인 부문에 진출하고 있다(ex. 북토피아).

그러나 최근 전자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자책 활성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형 서점, 포털사들이 잇달아 도서 본문검색 서비스 등 전자책 활용을 현실화되고 있고, 전자책 활성화는 또 젊은층의 높아지는 관심, IT 발전에 따른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의 활용 편의성 향상으로 시장환경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자책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콘텐츠 부족, 출판사들의 소극적 의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복제권 및 전송권에 대한 저작권 처리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 나. 저작권 처리방법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권리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140)

첫째, 서비스업자와 전송권자인 저자와 직접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저자는 출 판사에 종이책 출판을 위해 송부했던 원고 상태인 데이터를 서비스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원 고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자가 데이터 자체를 생산해야만 한다.

둘째, 서비스업자와 출판사 및 저작가 3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업자는 출판사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가 저자와 전송권 관련 권리처리를 함으로써 진행된다. 이 방법은 서비스업자가 출판사로부터 완전한 데이터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데이터 생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출판사와 저자간에 사용료 배분만 적정하게 이루어 진다면 가장 바림직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공유상태(public domain)의 저작물을 서비스업자가 자체적으로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방법이다.

전송권 사용료율은 산정기준은 서비스업체별 제작방식과 가격정책에 따라 전자책 형태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사용료율은 종이책과 같은 내용과 체재로 전자책이 제작되는 경우와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자책을 제작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전자책의 전송권 사용료 산정기준>

<sup>140)</sup> 김기태, "e-book과 저작권," 복사와 전송(2002), 9-10면.

제작방법	이용허락(계약)의 형태	전송권 사용료율
	- 서비스업자와 저자(전송권자)가 직접 계약 - 저자가 데이터를 제공	판매금액의 50%
조시케리 가이 비유리 웨	<ul><li>서비스업자와 저자(전송권자)가 직접 계약</li><li>서비스업자가 데이터를 새로이 제작</li><li>서비스업자, 출판사(출판권자), 저자(전송권</li></ul>	판매금액의 30%
중이작과 실근 내용과 제	- 서비스업자, 출판사(출판권자), 저자(전송권	판매금액의 60%
재로 전자책이 제작되는 경우	자) 3자간의 계약	(출판권자 30%, 전송권자
3 T	- 출판사가 데이터를 제공	30%)
	- 서비스업자, 출판사(출판권자), 저자(전송권	판매금액의 40%
	자) 3자간의 계약	(출판권자 10%, 전송권자
	- 서비스업자가 데이터를 새로이 제작	30%)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완전		
히 새로운 전자책을 제작	서비스업자와 저자(전송권자)가 직접 계약	판매금액의 20%
하는 경우		

# 4. 학술문헌정보(도서 및 논문)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 가. 학술문헌정보의 특징

학회나 연구활동에 관련하여 창출된 학술정보는 상업적 출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근 종이에 의한 정보생산·유통을 대신하여 CD-ROM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학술적 활동의 성격에 따라 정보의 전자화의 차이가 있다.

유통되고 있는 학술정보의 전형은 학술잡지, 학회지이다. 학술잡지를 출판하는 주체는 대학, 학회, 그리고 상업출판사이다. 그 특징은 상업유통에 관한 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 리를 우선적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저자의 상당수는 저작물의 복제가 금지되기 보 다는 적극적으로 연구자공동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회의 특징은 (i) 조직적 규모는 미국에 비하여 소규모이고, (ii) 한국어출판 물은 유통이 국내로 한정되며 국제유통을 도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iii) 학회 내에서의 출판의 전자화 등의 기술혁신은 미국에 비하여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 나. 저작권처리

인터넷을 통한 문헌정보제공에 관한 학회 측의 우려를 요약하면, (i) 잡지발행부수의 감소와 (ii) 회원의 감소로 요약될 수 있다.

잡지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 학술지를 정기구독하는 독자의 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회원이라는 편리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회원이 감소되어 학회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회가 출판하는 학술문헌정보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학회 측의 우려를 고려하여 다양한 요금을 설정하여 학회 측이 그것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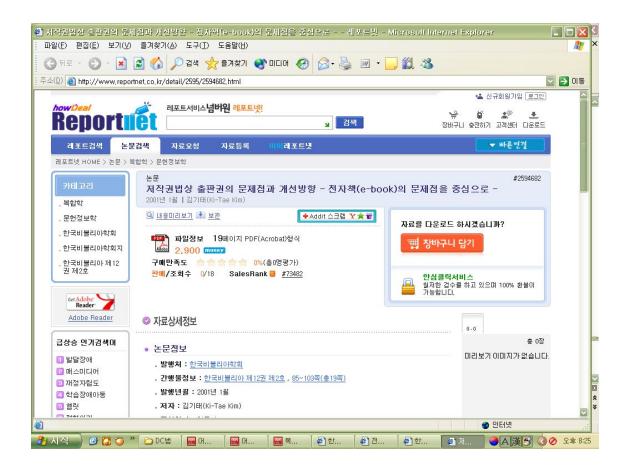
중요한 것은 학술지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연과학계, 의학계 출판물의 경우에는 논문게재에 관한 투고규정 등에 의하여 출판자가 저작자로부터 권리의 양도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학술전문서의 판매부수는 일반서적에 비하여 매우 적다. 따라서 이러한 학술전문서의 판매가격은 매우 비싼 경향이 있으며, 복사·전송이용에 의한 영향을 직접받기 쉬우며 판매가격은 출판물마다 차이가 크고 복사·전송이용단가는 출판자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비일임형에 의한 관리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학술지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때문에 출판자와 이용자가의 개별 협상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원문 DB 화를 통한 상업화가 진행되어 왔다. DB 업체로는 한국학술정보, 누리미디어 DBPia, 학술교육원 E-Article, 교보문고, 학지사, 뉴논문 등이 있다. 현재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취하고 있는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을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유로로 다운로드 해주거나, NAVER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유료로 출력해 주는 경우,
- 학술지(e-journal) 및 단행본(e-book)을 도서관에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 원문 DB는 주로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제노마드, 레 포트월드, 캠퍼스몬, 레포트매니아, 21C 지식정보센터, 키헬스신지식거래 그리고 포털인

네이버 등이 개별 학술논문제공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문헌정보서비스 사례>



#### 다. 전송사용료 산정기준

학술문헌정보의 전송권 사용료율은 산정기준은 서비스업체별 제작방식과 가격(또는 서비스) 정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산정기준은 원문의 전송 사용료를 기 준으로 하는 경우와 회원제 서비스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한다.

원문의 전송 사용료은 전자책의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측이 원고를 디지털파일로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의 제작비용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전송사용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학술문헌정보의 전송권 사용료 산정기준>

분류기준		디지털 파일의 제공여부	전송사용료율
저작물의	판	저작자가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	사용료 = 판매수량×판매가× 60% <sup>141</sup> ) 이내
매량		서비스업자가 데이터를 새로이 제작	사용료 = 판매수량×판매가× 30% 이내
		기기기기 단기다 테시티르 제고	사용료 = 매출액×60% 이내×어문저작물 관리비
회원제	서비	저작자가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	율
스		기미 2 이 기 기 레시티르 게그시 케키	사용료 = 매출액×30% 이내×어문저작물 관리비
		서비스업자가 데이터를 새로이 제작	율

<sup>141)</sup> 학술문헌정보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 이용이 효용을 크게 만족시키게 되고 재구

위 표에 의하면 저작자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송사용료의 구체적 내용[ 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60%이내]은 저작자가 원고의 디지털 파일을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다음과 같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협회의 현행 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전송사용료는 도서 및 학위논문은 면당 10원이므로, 학술도서 100페이지 1권의 전송사용료는 1,000원이다.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0면 기준 1건 당 500원 기본료, 추가 1면당 10원이다. 따라서 20페이지 정기간행물은 1건의 전송사용료는 600원이다.

학술지 등 정기간행물의 시중 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학술지 총페이지가 200페이지인 경우 (페이지별 단가는 100원) 20페이지에 해당하는 한편의 논문 가격은 의 경우 3,500원이다.

총페이지수간당 가격산정5p 미만1,000원5 ~ 10p2,500원(기본단가)/~10pages: 기본페이지11p 이상 ~ 1002,500(기본단가)+페이지수×페이지별 단가

200p 이상

**<표: 시중 학술 논문 가격 산정표>** 페이지수:논문별 총페이지수-10(기본페이지수)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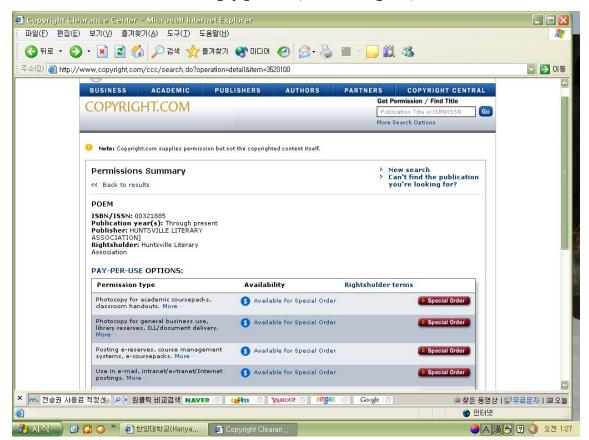
현재는 원고의 디지털 파일을 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업자는 저작권자측에게 판매금액의 15 ~30%를 지급하고 있으며, 525~1050원이 평균 저작권사용료이다. 그런데 본 연구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저작자로부터 원고의 디지털 파일을 제공받아 단지 pdf 파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사업자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서비스사업자가 20페이지에 해당하는 문헌을 3,500원에 판매한 경우에는 2100원 또는 1050원[2,800원×60%=1680원/2,800원×30%=840원]이내의 전송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회원제 서비스의 경우에 수입은 회비, 광고비 등으로 발생되므로 수입액 총액을 기준으로 저작권사용료[사용료 = 매출액 × 60%이내 × 어문저작물 관리비율]가 정해져야 한다. 여기서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이트에서 출판물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이외의 다른 콘텐츠 및 다른 이용에 대한 직접 대가를 제외한 제반 수입을 대상으로 하되, 다운로드 이외의 광고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하여는 출판저작물 비율(대해 사이트 전체 콘텐츠 설정 항목 중 출판물 다운로드 서비스 항목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매가 많지 않음을 감안할 때, 단행본 전자책과 학술지의 저작권사용료를 동일한 수준에서 검 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판매가의 60%이내를 저작권사용료로 설정함.

# 5. 시, 산문의 전송사용료기준

운문 또는 산문 등의 전송사용료 산정기준은 미국의 CCC에서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 권자가 저작권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사전에 그 금액을 공지하여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과금방식(pay-per view)은 저작물의 디지털화・네크워크화에 따라 권리자가 이용자로부터 접근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저작자가 사전에 저작권사용료를 설정하여 그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개별과금방식(pay-per view)에 의한 시(poem)의 전송서비스>

다만, 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와 같이 운문이나 산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음악저작물의 전송사용료142)에 준하여 별도로 전송사용료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작물

<sup>142)</sup> KOMCA 사용료기준 제23조의3(주문형 배경음악 서비스) 개인홈페이지 등에 사용자가 요청하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의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한다.

<sup>1.</sup> 곡당 25원×판매횟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sup>2.</sup> 매출액×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비고1) 할인율은 6개월 이하로 기간제한을 하는 경우 0.9를 곱한다.

제23조의4(홈페이지 배경음악서비스) 기업이 자사 홈페이지 등에 배경음악을 이용하는 경우 전송

을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이용하는 경우와 기업 및 단체의 홈페이지나 각종 커뮤니티에 이용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사용기간과 홈페이지 방문자수 등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한도록 한다.

제3절 어문저작물 전송인서비스 관련 법ㆍ제도 개성 방안

# 1.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저작권 권리처리의 문제점

최근 출판시장은 IT 발전에 따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가 자리잡으며 유통구조의 다양화 등 어문저작물에 대한 소비형태가 질적·양적으로 변화한 바 있다. 그러나이러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소비형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 및 권리처리 방안 등 이를 뒷받침해 줄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되지 않아 끊임없는 법적분쟁이 발생하여 왔다.

### 가. 저작권의 불합리한 사용료율 책정으로 합법적인 권리처리 및 사업영위 곤란

신탁관리단체를 비롯한 권리자단체들은 문헌정보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성 및 시장 현실과는 무관하게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사용료율로 나타나 합법적인 권리처리 및 사업 영위가 곤란할 수 있다.

# 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에 따른 사용료율 적용의 혼란 초래

최근 유·무선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이를 이용한 신기술들이 앞다투어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 개발의 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징수체제 등 제도적 보완은 항상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형태에 대한 권리처리 방법은 현존하는 서비스형태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거나 방치된 후 소급적용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기술에 대한 특성 및 시장의 현실이 고려되지 못한채 무리한 사용료율이 적용되어지거나 불합리한 징수체제 하에서 불법사이트로 전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용자들은 기술개발 및 투자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월평균 방문자 수 금액 5천명 미만 월 4,000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 월 10,000 1만명 이상 월 30,000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서비스형태 및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년 전 음악저작물의 스트리밍 및 무선인터넷서비스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합 리적인 징수체제 개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2.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리처리 방향

# (1) 권리처리절차의 최소화

대리중개업체의 난립을 지양하고 신탁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집중관리로 권리처리절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2) 어문저작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율 적용

사용료 산정 방식은 크게 실질적인 이용실태에 토대를 두어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미국이 주로 이 방법을 취함)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포괄적 사용료 결정을 위해서는 연간 저작물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법, 샘플링을 통한 추출조사 결과로 전체 사용료를 결정하는 방법, 저작물 이용 관련 요소(종업원수, 기기 대수 등)를 근거로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술한 CCC는 저작권자 및 출판자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구로서 우리나라의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CCC에 의한 저작권 사용료 정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거래별보고체제(transactional reporting system; pay-per-use service)로서 개별 거래별 사용료 정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 의한 자발적보고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방법은 논문이나 기타 어문저작물의 첫 번째 면에 저작권자가결정한 사용료를 공시하고 사용자가 사용료를 CCC에 지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징수된 금액은 CCC의 소요비용을 공제하고 저작권자에게 지급된다. 두 번째는, 연간사용허가방법 (annual authorization service)으로 거래별 보고체계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용자의 사용실적이나 산업계의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된 사용료를 징수하고 CCC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문저작물에 대하여 무제한적 사용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징수방법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영업적사용의 경우에는 거래별보고체계와 연간사용허가방법이 모두 적용되는 반면에 학문적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에는 거래별보고체제만을 적용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미국에서는 온라인 어문저작물의 출현에 따라 온라인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 징

수에 관한 새로운 단체가 등장하여 저작자, 출판자 등을 연결하여 주고 있다.143) 그러나 정 산방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저작권자에 의하여 권리의 사용료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CCC와 차이가 없다.

CCC를 비롯한 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정수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우리의 저작권집중 관리단체와는 달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저작권자와 출판자의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저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고 있는 우리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제도의 특징은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료를 그 사용빈도수나 해당분야에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으며, 특히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기업 또는 단체 또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개인이냐 등 사용자의 특성 또는 영리목적 또는 학문적 목적과 같은 사용목적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다르게 책정할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제시하는 사용료는 일반도서이냐 학습물이나 하는 단순구분과 사용면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어 불합리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징수의 용이성은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 사용자의보호라는 양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물론 미국 제도가 저작권 사용료 결정에 대한 거래비용을 높이는 단점은 있지만 저작권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과 이용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조할 만하다.144)

현실적으로 저작권 집중관리기구가 정수하는 사용료 수준이 크게 문제될 수 있다. 이 문제의해결점은 각국의 경우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포착할 수 있다. 각국의 경우는, (i)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다른 이용조건과 함께 기업의 단체, 정부 등의 저작물 이용자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형태, (ii) 미국의 CCC처럼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사용료를 설정하는 형태의 2가지인 바, 이 형태들이 우리나라에서 검토 대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ii)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권리자가 고액의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용료를 반드시 원고료나 인세 등의 저작권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여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셋째, 영리 목적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비영리의 학술연구기관과 영리성 있는 기업 사이에 사용료의 격차를 설치하는 등의 배려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는 저작물 이용자에 대하여 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주지시키기 위한, 예컨대 디지털저작물에 기구의 관리 저작물이라는 뜻의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신탁관리단체, CP(DS), 이용자단체 및 정부 등 이해당사자에 따라 저작권의 권리처리

<sup>143)</sup> http://www.rightscenter.com/ 및 Reciprocal®(www.reciprocal.com)

<sup>144)</sup> 조현승, "출판시장과 어문저작물의 저작권관리," 산업경제분석 2005, 65면.

방안 및 사용료에 대한 시각차이가 크다. 그러나 모두 궁극적으로 출판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절대적임을 인식하여 각 산업의 특성 및 역할에 따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이를 위해 온라인 어문저작물 정산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어문저작물 이용허락 및 사용료정산의 흐름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신뢰성 확보가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서비스 형태 및 비즈니스 모델은 예측 불가능하며 현재 어문저작물 유통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알수 없다. 이에 음악저작물 산업에서 발생하였던 스트리밍의 경우처럼 개념자체가 다른 오프라인 음반유통과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IT산업과 신기술의 특성 등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맞는 합리적인 징수체제 마련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합리적인 분배비율의 결정

이용자들로부터 집중관리단체가 거두어들인 비용을 저작자와 출판업자 간에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 덴마크처럼 법으로 정하고 있는 유형이 있는 반면, 영미법계처럼 자유로운 계약에 의하도록 맡겨놓은 유형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대체로는 50 對 50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145) 미국 저작권법과 달리 출판업자의 특별한 권리를 저작권법에 규정한 영국 등의 경우에는 배분을 둘러싸고 저작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자 상호간 분배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이 집중관리단체에게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영국 CLA는 저작자집중관리단체(ALCS: Authors Licensing and Collecting Societies)와 출판사집중관리단체(PLS: Publishers Licensing Society)를 모두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과학저널의 복사에 대한 수입 배분시 저작권의 귀속 여부를 고려, 출판사가 복사된 논문 가운데 최소 90% 이상에 대해 저작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수입을 가지되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여타의 출판물도 포함) 50 對 50으로 분배하고 있다. 물론미국 CCC는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의 배분은 물론이고 각 권리자들 사이의 배분 방식 역시저작물별, 사용별로 관련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맡겨 놓아야 할 것이다. 어문저작물, 특히 학술문헌정보 제공 서비스 등에 있어서 저작자, 출판사, 통신망사업자, CP 등 각각의 기여부분을 수치로 계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용료수입의 분배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자칫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수수

<sup>145) 50/50</sup>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다시 세분하면 독일의 경우처럼 VG Wort가 만든 약정에 따라 non-fiction인 경우에는 50/50, fiction인 경우에는 70/30 (저작자 對 출판사)으로 되어 있는 유형도 있고, 노르웨이와 같이 교과서, non-fiction, song book, sheet music, novel, fiction, newspaper, encyclopaedias 등 상세한 기준으로 나누는 유형 등도 있다.

료의 요율 등에 대한 행정감독 이외에 사용료의 분배 등 관련단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가능하고 합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공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 바, 이에 현재 저작권분쟁에 관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중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효과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조정을 통한 해결은 조정제도가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다툼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이기도 하다.146)

### 3. 어문저작물 온라인서비스사업 활성화 방안

### 가. 서설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이용자로 하여금 편리하고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한다.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발전은 국가의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핵심이며 따라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이 그다지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도서관별 중복투자 및 상호 연동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완성을 더디게 하는 복병으로 등장하였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하고 방대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야 하고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전송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히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자와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 디지털 문헌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무작정 디지털화에 매달리거나 저작권 이용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주요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권자들과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노하우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한편 어느 정도 기능화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저작권 이용허락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고 정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 및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나 디지털 식별기호 및 메타데이터 개발,기타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법률 정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거래시장 활성화는 디지털 문헌정보서비스의

<sup>146)</sup> 이경규, "디지털음악저작물시대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개선방향", 연세법학연구(제7집 제1권, 2000), 620-621면.

발전, 나아가 국가 콘텐츠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가름하게 될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인지하고, 하루빨리 저작권 거래 시장을 육성할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육성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설립 및 기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은 정보통신 환경에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을 많은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정보서비스기관은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 절차를 체계화하여 가능한한 개별적인 저작 권자와의 이용허락 획득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더욱이 정보통신의 발달은 이용허락 절차 의 간편화를 제공하여 이러한 개별적인 이용허락 획득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 예견된다.

그러나 분명 개별적인 이용허락 획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이용허락 절차의 간편화는 저작권 집중관리의 발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정보서비스 기관의 개별적인 이용허락 획득이 증가함과 동시에 CCC, CLA 등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통한 이용허락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고, 집중관리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활성화는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낳으며, 이는 저작자에게는 수익창출 및 이로 인한 재창작 여건 제공을, 이용자에게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 증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외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배경을 보면 저작자 및 출판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의지로 탄생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도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성장하고, 활동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중관리기관 육성은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상당한 편이와 거래비용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견 개진 및 대정부 건의 등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작권 집중관리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다양한 이용방법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집중관리 대상 저작물의 범위 및 관리 대상 이용범위의 설정, 권리처리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자의 회원 확보를 위해서는 전술한 대로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 징수 및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료의 객관적인 산정을 위해서는 i) 합리적인 사용료 산정 방식 개발 ii) 정확한 기초 산정자료의 결정 및 확보 iii) 산정 요소들 상호간의 가중치 결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 다. 디지털 정보서비스(문헌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관리업무 강화

국내 저작권 이용허락 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하여 당분간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자체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을 비롯한 저작권 관리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저작물 이용허락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저작권이 학회나 출판사에 양도된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학술논문의경우에는 학회에,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 발행처 등에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간편할 것이다. 특히 외국저작물의 경우 대부분 출판사나 학회가 권리를 양도받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판사, 학회 등에 접근하되, 저작권 집중관리기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이곳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147)

일본 문부성의 학술정보센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본의 각 학회에 대하여 학회지 간행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학회와 각서 형식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디지털화의 허락을 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문을 이용자에게 유료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학술정보센터에 납부하는 이용료의 약 25%를 학회측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148).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사권 단체의 설립 등 저작권 집중관리의 활성화가 정보제공서비스기관의 성공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깨닫고, 이러한 저작권 집중관리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관련 저작권자 및 정부를 설득하고 장려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국내 디지털 정보서비스 기관은 저작물 이용의 어려움을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용허락 획득에 적극적으로 자구의 노력을 꾀하고, 표준이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 라.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의 디지털 환경에의 적응

주요 선진국의 일부 복사권 단체들(CCC, CLA 등)은 저작권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복사와 같은 새로운 이용 유형에까지 이용허락 범위를 확대, 발전시키고 있다.

CCC의 경우 비즈니스 부문과 관련하여 스캔/저장/프린트/다운로드 등의 전자적 이용 행위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부분과 관련하여 연구기관의 전자적인 저장 및원거리 교육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최근 RLS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저작물의 재출판, 재생산, 재배포에 대한 이용허락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서, 책·CD-ROM은 물론 연속간행물·전자우편이나 웹을 통한 전자적 전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sup>147)</sup> 양승두, .『학술원문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서울:첨단학술정보센터, 1998, 67면.

<sup>148)</sup> 양승두, .앞의 보고서, 73면.

태로 저작물을 재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가능하게 한다.

단, CCC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적으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등록된 저작물만을 이용허락 대상으로 하며, 또한 전자적인 저작물의 이용(디지털화, 통신망을 통한 저작물의 전송 등)을 이용허락의 범위로 확장할 것인지는 저작권자의 의지에 달렸다. 즉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허용된 전자적인 저작물의 이용만이 이용허락될 수 있다.

CCC는 일찍이 TRS서비스를 통하여 정보서비스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용허락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따라서 저작권자가 허용한 경우 전자적인 이용과 관련한 이용허락의 체결도 가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 기관(CISTI, ISI, UNCOVER 등)은 저작권 처리를 위하여 저작권자나 출판자와의 개별적인 협의에 의해 저작물 이용 수수료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CCC의 이용허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CCC는 저작물의 전자적인 이용에 대한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마. 신탁등록과 저작권등록의 연계를 통한 집중관리의 활성화

신탁등록이란 저작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작권 및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미래에 발생할 저작권까지 신탁단체에 신탁함으로써 저작가는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고, 신탁단체는 신탁 받은 저작권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저작물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료의 분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 어문저작물을 집중관리하는 단체와 저작자간에 저작권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에도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저작물의 신탁등록이 활성화되고 저작권 등록제도와 연계가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로서는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전송사용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등록프로세스와 신탁기 관의 신탁등록 프로세스를 연계함으로써 저작권자가 신탁계약과 동시에 원할 경우 저작권등 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신탁단체와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모델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IV.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정기 외, 「디지털 시대 한·일 양국의 저작권 법제와 처리관행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방송공사, 2005

서달주,「한국저작권법」, 박문각, 2007

송영식ㆍ이상정 공저,「저작권법개설(제4판)」, 세창출판사, 2007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박영사, 200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2001

지적재산권법학회, 「저작권 대리중개제도 개선방안 연구」,문화관광부, 2008

한국저작권법학회,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4

허희성, 「2007신저작권법축조개설(하)」, 명문프리컴, 2007

홍성방, 「헌법학(개정3판)」, 현암사, 2006

김기중, "저작권 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방향", 「계간저작권(통권 제71 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가을호)

김병일, "저작권 위탁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이론, 현실 그리고 과제」, 한국지적재산권학회 세미나자료, 2008

박덕영, "영국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지식재산연구(제1권 1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06

박영길, "저작권의 집중관리와 독점규제법의 관계",「지적소유권법(제4집)」, 지적소유권법학회, 2000

\_\_\_\_\_, "저작권 위탁관리업제도의 재조명 -디지털환경 하의 역할과 기능-", 「저작 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_\_\_\_\_,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계간저작권(통권73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방석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계약의 법적 의미와 분석", 「법학연구(제6집)」, 홍익 대학교, 2004

안효질, 독일 VG WORT의 운영실태와 국내 저작권관리제도의 개선방향, 知的財産權의 現在와 未來;素潭 金明信先生 華甲記念論文集, 2004. 법문사

오병일, "인터넷과 저작권의 딜레마", 「계간저작권(통권 제59권)」, 저작권심의조정

위원회, 2002(가을호)

오승종,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제8권 제1호)」, 삼 우사, 2007

윤선희, "지적재산의 신탁 -일본의 개정신탁업법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제47호)」, 세창출판사, 2007(여름호)

이상정, "디지털 환경하의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계간저작권(통권 제74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여름호)

\_\_\_\_\_, "최근 일본의 저작권법개정에 관한 소고, 「계간저작권(통권 제81권)」, 저 작권위원회, 2008(봄호)

\_\_\_\_, "저작권 집중관리에 대한 규제의 기본방향", 「,창작과 권리(제52호)」, 세창 출판사, 2008(가을호)

이영록,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저작권연구자료 53」, 저작권위원회, 2007

이호흥, "집중관리단체",「저작권법전면개정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저작권심의조 정위원회, 2001

\_\_\_\_\_, "저작권행사와 독점금지법", 「계간저작권(제63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정선주, "독일의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GEMA", 「계간저작권(통권46권)」, 저작권심 의조정위원회, 1999(여름호)

정상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2

하동철,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창작과 권리(제50호)」, 세창출 판사, 2008(봄호)

한국복사전송권세터, 도서관에서의 복사·전송권 사용료 적정선 연구, 2001 한국복사전송권세터, 외국의 복사·전송권 관리실태 조사연구, 2001

### 【외국문헌】

Alan R. Kabat, Proposal for a Worldwide Internet Collecting Society: Mark Twain and Samuel Johnson. Licenses, 45 J. Copyright Soc'y U.S.A. 329, Spring 1998

Adolf Dietz, Legal Regulation of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 Law) in Western and Eastern Europe, Journal of the Copyright Society of the U.S.A. Vol. 49, Summer 2002

David Sinacore-Guinn, 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International Practices, Procedures and Organizations, Little Brown & Co Law & Business, April 1993

Daniel Gervais,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 Kluwer Law International, 2006

Handke, Towse,: Economics of Copyright Collecting Societies, IIC, Heft 8, 2007

Philippe Gilliéron: Collecting Societies and the Digital Environment, IIC, Heft 8, 2006.

Rober M. Hurt & Robert M. Schuchman, The Economic Rationale of Copyright, American Economic Review, 1966

Vogel, Wahrnehmungsrecht und Verwertungsgesell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RUR 1993

Schricker, Zum Begriff der angemessenen Vergütung im Urheberrecht - 10% vom Umsatz als Maßstab?, GRUR 2002.

作花文雄,「詳解 著作權法(第3版)」, ぎょうせい, 2000

日本著作權審議會,「著作權審議會 權利の集中管理小委員會 報告書」, 2000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報告書」,日本文化廳,2000

著作權法令研究會,「逐條解說 著作權等管理事業法」, 有斐閣, 2001

尾崎史郎, "著作權等管理事業法",「ジュリスト」, no. 1195, 有斐閣, 2001

阿部浩二,北川善太郎,"權利管理システムの去來像,コピーマートを中心に:總論",「著作權研究(第29号」,著作權法學會,2002

森下元文, "非一任型の著作權等管理業務に關する實態調査報告", 「コピライト」, no. 561, 著作權情報センター, 2008

### <웹사이트>

http://www.copyright.com

http://www.copyright.com.au

http://www.jrrc.or.jp

http://www.jcls.co.jp

http://www.ifrro.org

http://www.kopinor.no

http://www.vgwort.de

-

# [부록]

# 1. 2007년 한국복사전송권관리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현행	2007. 2 개정(안)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2007. 2. 문화관광부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행하는 저작권 관리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저작권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문서화)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사 또는 전송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센터와 문서로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은 별도 로 정한다.	제3조(계약 약관) 이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 계약 약관은 별도 로 정한다.
	제4조(관리 대상)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1) 도서 및 학위논문 2)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간행물 3) 사진·미술·음악 저작물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사진·미술·음악저작물의 사용료는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이용 구분)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구 분은 다음과 같다. 1. 복사 2. 전송 3. 기타	제5조(이용 구분)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복사 2. 전송 3. 기타 제2장 복사사용료 (삭제)
제5조(저작권사용료) ①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자는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용료로서 개별허락계약(본 센터 저작물 이용에 관 한 계약 약관 제8조 제1호의 계약을 말한다)의 사용료의 상한 은 저작물의 종류와 복사·전송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도서 및 학위논문	

1) 복사 : 1면당 5원

2) 전송: 1면당 10원

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간 행목

3) 복사 : 도서와 같음

4) 전송: 10면 기준 1건당 500원 기본료,

추가 1면당 10원

다. 사진 • 미술 • 음악 저작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 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 ③ 전항의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트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 ④ 제2항의 사용료는 저작권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 ⑤ 포괄허락계약의 사용료는 개별허락계약의 사용료를 기초로 하여 '이용자 규모', '이용의 영리·비영리성', '이용되는 저작물 의 성격', '복사기 대수',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⑥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복사·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별 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 ① 복사업소의 복사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ㅇ 유인복사기의 대당 복사사용료

구분	분류기준	사용료	비고
1	특별시 및 광역시 종합대학, 일반대학 구내	420,000	
2	특별시 및 광역시 대학가 주변 특별시 및 광역시 기능, 군사, 예체능 목적 대학 구내 도청소재지 대학 구내	360,000	
3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 도청소재지 대학가 주변 시청소재지 대학 구내	300,000	
4	도청 소재지 시내 시청소재지 대학가 주변 군 지역 및 기타 대학구내 및 주변	240,000	

### ㅇ 무인복사기의 대당 저작권사용료

구분	분류기준	사용료	비고
1	특별시 및 광역시 종합대학, 일반대학 구내	90,000	
2	특별시 및 광역시 대학가 주변 특별시 및 광역시 기능·군사·예체능 목 적대학 도청소재지 대학 구내	72,000	
3	특별시 및 광역시 시내 도청소재지 대학가 주변 시청소재지 대학 구내	45,000	
4	도청 및 시청소재지 시내 군 지역 및 기타 대학 구내·외	27,000	

### 제7조(관공서, 기업체, 연구소 사무실 등의 공증용 복사기 복사 사용료)

- ① 관공서 등의 사무실 복사기 복사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복사사용료 = 복사기대수 × 20,000원
- ③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복사기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복사사용료 = 복사기대수 × 50,000원

#### 제3장 전송사용료

제8조(원문 전송 사용료) ① 원문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다 운로드하는 전송 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 금액으로 한다.

- 1. 저작물 판매량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경우
  - 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60%

 비고
 1)
 판매수량이라
 함은
 단행본의
 경우에
 전체

 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수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

 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말한다
 가
 보

- 2. 회원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
  - 사용료 = 매출액 × 60% × 어문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이트에서 출판물다운 로드 서비스 이용 이외의 다른 콘텐츠 및 다른 이용에 대한 직접 대가를 제외한 제반 수입을 대상으로 하되, 다운로드 이외의 광고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하여는 출판저작물 비율(대해 사이트 전체콘텐츠 설정 항목 중 출판물 다운로드 서비스 항목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4장 기타 (삭제)

**제6조(기타 사용료)** 전조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기타 사용료) ① 전조에서 정하는 사용료 이외의 방법에 의한 사용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터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한 후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센터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면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개정안(2008.04.04)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절 전송 사용료
<신 설>	제15조(인터넷 동영상강의 사용료) 저작물을 인터넷 동영 상강의에 이용하는 경우 판매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 용료를 정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강좌별 판매: 강좌별판매가 × 판매건수 × 8%  2. 월정액 회원제: 월정금액 × 회원수 × 8% × 협회관련 강좌비율  3. 무료 서비스: 매출액 × 4% × 협회관련강좌비율  * 매출액은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과 광고 및 기타 의 수입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신 설>	제16조(전자책(e-book) 사용료) 저작물을 전자책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제13조 출판사용 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디지털화비용에 다음의 금액을 더 한 것을 사용료로 정한다. ▷판매가 × 판매건수 × 30%
<신 설>	제17조(오디오북 사용료) 저작물을 오디오북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제13조 출판사용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디지털화비용에 다음의 금액을 더한 것을 사용료로 정한다.  ▷판매가 × 판매건수 × 20%
<신 설>	제18조(기업 및 단체 홈페이지, 커뮤니티) 저작물을 기업 및 단체의 홈페이지나 각종 커뮤니티에 이용하는 경우 사용 기간 3개월, 홈페이지 방문자수 1,000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정한다. 1. 메인페이지에 이용 운문, 산문저작물 건당 100,000원 (단, 산문은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2. 서브페이지에 이용 운문: 편당 10,000원 산문: 1매 1,000원 * 최저 방문자수 1,000명 이하는 1,000명으로 간주하고, 1,000명 초과부터 방문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산정 함.

<신 설>

제19조(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저작물을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정한 다.

운문: 편당 500원 산문: 1매 50원

제20조(이메일 발송) 저작물을 이메일 발송에 이용하는 경우 수신자 100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정한다. 운문, 산문저작물 건당 10,000원 (단, 산문은 원고지 10매이내)

\* 최저 수신자수 100명 이하는 100명으로 간주하고, 100명 초과부터 수신자수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산정함.

### 제4절 사진저작물 사용료<신설>

- \* 기본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이 별도로 명시 된 경우엔 그에 따른다.
- \* 서브는 해당면적의 1/8사이즈 미만이며, 역할이 메인 인 경우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메인으로 간주한다.
- 1. 편집 및 출판

1100=	11 O11 =11	) () -    -    ) () () ()		사용료	
사용용도	사용매체	사용범위	간	메인	서브
	참고서,학습	표지	1년	200,000	
참고서,서적	지,단행본,잡	내지	1년	150,000	
	지	41/1	1 년	130,000	
사전류	백과사전,도	표지	1년	150,000	
/ 사신ㅠ	감,사전	내지	1년	100,000	
	사보,뉴스레	표지	1년	200,000	
사보,기관지	터,기내지,기	, II -zl	413	150,000	
	관지 내지	1년	150,000		
신문,기관지	중앙지		1년	200,000	
등 기사용	지방지,전문		1년	120,000	
0 / 1/10	지,기관지		17	120,000	

### 2. 광고 및 판촉물

사용용도	사용매체	사용범 위	사용범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용도	사용배제	위	사장기산	메인	서브	
		돌출	1년	300,000		
	중앙지	1~9단	1년	450,000	300,000	
신문광고		10~15단	1년	600,000	350,000	
	지방지,전 문지		1년	300,000	200,000	
잡지광고	일반교양 지,전문지		1년	450,000	300,000	

<신 설>

<신 설>

1					
	대학지,학 술지,사보, 가계부,전 화번호부 광고		1년	300,000	200,000
	-	차량내	6개월미 만	400,000	300,000
리 과	기차,지하	차량내 부	6개월이 상	500,000	400,000
차량광고	기차,지하 철,버스 등	차량외	6개월미 만	500,000	400,000
		부	6개월이 상	600,000	500,000
	중앙방송		6개월미 만	500,000	
	2002		6개월이 상	600,000	
TV광고	지방방송,		6개월미 만	400,000	
	지방방송, 홈쇼핑,케 이블TV,인 터넷방송		6개월이 상	500,000	
	중앙방송		6개월미 만	350,000	
TV배경화	0000		6개월이 상	450,000	
면면	지방방송, 호쇼핑 케		6개월미 만	300,000	
	지방방송, 홈쇼핑,케 이블TV,인 터넷방송		6개월이 상	400,000	
카다로그	팜플렛,브 로슈어,에 뉴얼리포 트,기타기 업보고서,		표지	300,000	200,000
	DM,사용 설명서,안 내책자,소 식지		내지	200,000	
전단,리플 렛	낱장인쇄 물			200,000	
포스터				500,000	300,000
			1만부미 만	750,000	
	1매철(벽걸 이용)		5만부미 만	900,000	
	이용)		10만부 미만	1,050,000	
캘린더			10만부 이상	1,200,000	
			1만부미 만	500,000	
	6매철(벽걸		5만부미 만	600,000	
	6매철(벽걸 이용)		10만부 미만	700,000	
			10만부 이상	800,000	
	40-11-21 (N)		1만부미 만	450,000	
	12매철(벽 걸이용)		5만부미 만		

			10만부 미만	650,000	
			10만부 이상	750,000	
			1만부미 만	300,000	
			5만부미 만	350,000	
	탁상용		10만부 미만	400,000	
			10만부 이상	600,000	
			3개월미 만	400,000	300,000
		1개장소	6개월미 만	500,000	400,000
0 0 2 2	와이드칼 라,네코,현		6개월이 상	600,000	500,000
옥외광고	수막,기타 옥외광고		3개월미 만	500,000	400,000
		2개장소 이상	6개월미 만	600,000	500,000
			6개월이 상	700,000	600,000
		1개장소		500,000	
간판		2개장소 이상		700,000	
		10개장 소 이상		900,000	
			3개월미 만	350,000	
		1개장소	3개월이 상	450,000	
디스플레	실내외 벽면장식,	2개장소	3개월미 만	450,000	
0]	인테리어, 전시회부 스 등	이상	3개월이 상	550,000	
	_ 0	10개장	3개월미 만	550,000	
		소 이상	3개월이 상	650,000	
POP,데코		1개장소		300,000	
레이션		2개장소 이상		400,000	
기타판촉 용	부채,라벨, 스티커,카 드,복권,입 장권,무구류, 통장 등장			200,000	
제품패키 지(판매용 )	제품자체 인쇄,음반 자켓,판매 용문구류, 신용카드 등			300,000	
자판기				700,000	
로고,심볼, 캐릭터				700,000	
홍보용슬 라이드,멀 티비전,사 외용프리 젠테이션				150,000	
	배너광고			200,000	
인터넷	홈페이지			150,000	100,000

	이메일발 송,월페이 퍼
	스크린세 이버,게임, 소프트웨 어
	핸드폰,P DA등 내장
	현금지급 기,발매기 모니터등 300,000
	제5절 기타 사용료
	제21조 (현행과 동일)
제5절 기타 사용료 제21조(생략)	부칙
\\\\\\\\\\\\\\\\\\\\\\\\\\\\\\\\\\\\\\	제1조(현행과 동일)
부칙	
제1조(생략)	

이다 잉요주체 설정

어문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료는 2장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복사사용

우리나라의 어문저작물 전송사용료 기준료 저작권사용료 징수현황

## 1. 한국복사전송권관리협회

## (1) 개요

개정안은 저작물의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전송사용료를 별도로 구분하고, 서비스 유형별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제8조)

제1장 총최 제2장복사사용료 제3장 전송사용료 제8조(원문 전송 사용료) ① 원문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으로드하는 전송 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 금액으로 한다. ② 전항의 사용료로서 개별허락계약(본 센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1호의 계약을 말한다)의 사용료의 상한 은 저작물의 종류와 복사・전송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도서 및 학위논문 1) 복사 : 1면당 5원 2) 전송 : 1면당 10원 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간 행물 3) 복사 : 도서와 같음  ■ 사용료 = 매출액 × 60% × 어문저작물관리비율	2000.11.14 승인 사용료 규정	개정(안)
## ## ## ## ## ## ## ## ## ## ## ## ##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다. 사진・미술・음악 저작물       른 이용에 대한 직접 대가를 제외한 제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       입을 대상으로 하되, 다운로드 이외의 광         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하여는 출판저작물         ③ 전항의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 형태로       율(대해 사이트 전체콘텐츠 설정 항목 중	2000. 11. 14. 문화관광부 승인 제5조(저작권사용료) ① 본 센터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사용자는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용료로서 개별허락계약(본 센터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 제8조 제1호의 계약을 말한다)의 사용료의 상한은 저작물의 종류와 복사·전송의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다. 가. 도서 및 학위논문 1) 복사: 1면당 5원 2) 전송: 1면당 10원 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기간행물 3) 복사: 도서와 같음 4) 전송: 10면 기준 1건당 500원 기본료, 추가 1면당 10원 다. 사진·미술·음악 저작물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음악저작물은 문헌형태의 악보 복사 및 전송에 한한다. ③ 전항의 전송사용료는 읽기전용 및 출력을 위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형태가 프린트물일 경우에는 복사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제2항의 사용료는 저작권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공지하고 그 금액을 적용한다.	2007. 2. 문화관광부 승인 제1장 총최 제2장복사사용료 제3장 전송사용료 제8조(원문 전송 사용료) ① 원문을 컴퓨터 등으로 복제하여 다 운로드하는 전송 서비스의 사용료는 다음 금액으로 한다. 1. 저작물 판매량에 의하여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경우 ● 사용료 = 판매수량 × 판매가 × 60% 비고 1) 판매수량이라 함은 단행본의 경우에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 물을 말한다.  2. 회원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 ● 사용료 = 매출액 × 60% × 어문저작물관리비율 비고 1)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사이트에서 출판물다운 로드 서비스 이용 이외의 다른 콘텐츠 및 다른 이용에 대한 직접 대가를 제외한 제반 수입을 대상으로 하되, 다운로드 이외의 광고수입과 기타 수입에 대하여는 출판저작물 비율(대해 사이트 전체콘텐츠 설정 항목 중 출판물 다운로드 서비스 항목의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의 성격', '복사기 대수',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⑥ 데이터베이스 등에 관련된 복사·전송 이용에 대해서는 별 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